I. 민중세력의 성장

- 1. 신분제의 이완과 민중사회의 성장
- 2. 민중의 사회적 결속
- 3. 민중운동의 사상적 기반

I. 민중세력의 성장

1. 신분제의 이완과 민중사회의 성장

1) 사족지배구조의 정착과 신분구조의 변화

임진왜란은 조선 건국 이래 오랫동안 안정을 구가하던 당대인들에게 엄청 난 심적·물적 피해를 안겨주었고, 급격한 인구 감소, 국가 행정체계의 마비 와 같은 수많은 문제점을 한꺼번에 노정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7년 여에 걸쳐 전개된 임진왜란 종결 이후 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전 후 몇 년 동안은 영농에 적합한 기후가 지속되었으며 지주와 작인을 불문하 고 영농욕구가 거세었으므로, 복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국가의 적극 적인 勸農政策에 힘입어 복구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 때 복구사업을 주도한 계층은 兩班層이었다. 그들은 임진왜란 발발 이래 義兵 활동에 참여 하는가 하면 納粟政策에도 적극성을 보이는 등, 전란 초기 일본 정규군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던 조선측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행정체계를 수습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양반층은 복구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 이유에서 전후 복구사업의 진행 단계에 비례하여 양반층의 사 회적·경제적 생활 또한 회복추세에 있었다. 각종 이권에 대한 양반층의 지 나친 관심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정도로, 양반층이 주도한 복구사 업은 활기를 띠어갔다.

당시 양반층이 복구사업을 주도하게 된 데에는 전후 국가의 대민 지배정책의 방향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당시 국가정책은 민간경제와 생활에 대해서 국가의 작위적인 공권력 개입을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 곧 '與民休息'정책을 기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반층은 개간전에 대한 조세정수의 유예라는 권농정책의 틈을 이용하여, 혹은 국가 공권력의 개입 유보

라는 '여민휴식'정책의 기조와 관련하여, 개간 혹은 소유 토지의 量案 등재를 기피하거나 보유 노비들을 호적에서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전세 및 가호세의 정세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그렇지만 양반층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實結數 및 家戶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분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영역이었다. 양안과 호적이양반층의 조직적인 이탈, 탈루 상황에서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지출 부분에 대한 세입의 총량이 항상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왕실 및 중앙 각 아문은 긴축재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없었다. 이처럼 양반층의 성장, 그리고 그들의 사회세력화의 추세는 국가의운영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셈이다.1)

이 시기 양반층의 사회세력으로서의 성장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으로는 그들의 군역 면역층으로의 전환과 호적, 號牌 기재 양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양반층의 군역 면역층으로의 전환과정을 살펴보자. 조선초기 이래 군역은 양인층의 仕宦權 곧 양인층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받았다. 그렇지만 16세기 전반 이래 國役體制의 해체과정에서 良賤制的 신분구조는 무너져 갔으며, 良人皆役制에 입각한 군역 동원 방식 또한 변질되고 있었다. 의진왜란 시기 관군이 일본 정규군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은 양인상층, 곧 양반층을 군역에 동원시켜 국방력을 유지하려 한 조선 초기 이래 누적되어온 국방정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계기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는 양인층 이외에도 賤人層이 군역에 편성되는 가 하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訓練都監이 새롭게 설치되는 등 군역 및 군제운영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양인층만이 군역을 져야 한다는 양인개역제 원칙과 兵農一致 방식에 의한 군제운영 방식으로부터, 군역편성의 대상이 천인층까지 확대되고 養兵制 방식으로 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군역 및 군제의 이와 같은 변화는 군역의 주요 대상층으로 간주되던 양반층의 면역 가능성을 넓혀주는 계기가

¹⁾ 金盛祐,《朝鮮中期 士族層의 성장과 身分構造의 변동》(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7).

金盛祐, 〈16세기 國家財政 수용의 증대와 國役體制의 해체〉(《韓國史研究》97, 1997).

되었다. 16세기 이래 양반층의 면역추세는 대세를 이루었지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대세를 추인받기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여전히 양반층을 군역의 주요 대상층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그들을 充軍시키고자 노력했다. 물론 국가의 이러한 정책은 양반층의 저항에 부딪쳐 번번히 무산되었다. 광해군 초반과 인조 초반에 각각 시도되었던 호패법과 校生考講政策이 실패로 끝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후 양반층은 면역층으로서의 지위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살아서는 幼學을, 죽어서는 學生이란 직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3)

두번째 변화는 호적·호패 기재 양식이었다. 조선 초기 이래 국가의 인민지배 방식은 양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양반층의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지던 상황 아래에서 점차 그 규정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군역의 주요 대상층으로 파악되던 양반층이 면역층으로서의 합법성을 획득해 갔으며, 국역 면제층으로 간주되던 천인층이 새롭게 군역에 편제되어 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역편성과 관련하여 '有役者=良人', '免役者=賤人'으로 전체 인민을구분하던 조선 초기의 양천제적 신분구조로부터 '兩班=免役者', '常民=有役者'로 구분하는 방식, 곧 班常制를 용인하는 형태로 신분구조가 전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호적과 호패의 기재양식에도 영향을 끼쳐 여성의 稱氏 대상자 혹은 角牌 착용 대상층이 양반으로 국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축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양반층은 사회구조, 관습 전반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대시켜 갔으며,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양반층이 주도하는 이 시기의 사회구조를 士族支配構造라 부를 수 있다.

임진왜란은 양반층의 사회적 성장 못지 않게 국가의 대민 지배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16세기 이래 사회적 현실관계를 반영하는 반상제가 국가의 주요 대민 지배방식이었던 良賤制的 신분구조를 밀어내고 중요한 사회신분구조로서 자리를 잡아갔다. 그렇지만 양반층과 상민층의 사회경제적, 정치사상적 차이가 노골적으로 표출된 계기는 임진왜란이었다. 양반층은 관군이 궤멸적 패배를 당하고 있던 전란 초기 상황에서 의병을 일으켜

³⁾ 崔永浩、〈幼學・學生・校生考-17세기 身分構造의 변화에 대하여-〉(《歷史學報》 101, 1984).

전투에 임하는가 하면 향토방위를 위해서도 노력했으며, 전쟁의 소강기에도 納粟 혹은 軍功을 통해서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계층으로서의 그들의 소임을 다했다. 반면 상민층은 일본군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국가의 공권력이와해된 상황에서 평소에 축적되어 오던 국가와 양반층에 대한 적대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임진왜란은 양반층과 상민층 양자의 지향과 생활방식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준 계기로 작용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신분정책 또한 이러한 상황에 조응하여 전환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반층에 대해서는 사회를 주도하는 특권층으로 인정해 주는가 하면 '封建的 存在'로서의 그들의 특수성을 부여해 주었다. 반면상민층에 대해서는 村氓, 無識・無賴輩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늘어가다가 사족지배구조가 정착되는 추세에 비례하여 常漢(상놈)이란 호칭으로 고정되었다. 4) 그리하여 양반층 주도 아래 전후복구사업이 완료되어간 17세기 전반 이후 전체 인민은 양반층과 상민층, 양 세력으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차별적인 인민 편제방식은 각종 受敎類에도 반영되는 등 국가의 준법제적 규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5) 현전하는 호적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사족지배구조가 확립된 17세기의 신분별 인구 구성을 검토해 보면 〈표 1〉과 같다.

			양 반	중 인	양 인	천 인	기 타	합 계
경	산음	1606	13.75		40.92	41.66	3.67	100%
상	[건급	1630	15.85		43.01	34.53	6.61	100%
	단성	1606	18.15		14.54	64.37	2.93	99.99%
도	울산	1606	2.4		50.5	47		100%
서울		1663	17.0	7.6	22.5	52.9		100%

〈표 1〉 17세기 경상도 및 서울의 신분별 인구 구성비(6)

⁴⁾ 李元翼, 《梧里集》 〈別集〉 1, 引見奏事 인조 2년(1624) 2월 24일.

^{5) 《}受教輯錄》 刑典 奸犯 康熙 辛亥(현종 12년; 1671) 承傳.

⁶⁾ 盧鎭英,〈17世紀初 山陰縣의 社會身分構造와 그 變動〉(《歷史教育》25, 1975). 韓榮國,〈朝鮮 中葉의 奴婢結婚樣態(上・下)-1606년의 蔚山戶籍에 나타난 事例 를 중심으로〉,《歷史學報》75・76, 77, 1978, 1979).

韓基範,〈17世紀初 丹城縣民의 身分構成-戶籍分析을 中心으로-〉(《湖西史學》 10, 1982).

조성윤, 〈17세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鄕土서울》 54, 1994).

대체로 17세기 전반~중반에 이르기까지 신분별 인구구성은 양반이 10% 내외, 상민층 가운데 양인층 40%, 천인층 50% 내외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현종 4년(1663)에 작성된 서울 북부호적은 전체 신분을 顯, 作, 賤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양반층을 顯으로, 상민층 가운데 양인을 作으로, 천인을 賤으로 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 인민에 대한 이와 같은 3구분법은 종래 양인과 천인으로 2구분하던 양천제로부터 양반(顯)과 상민(作・賤)으로 2구분하는 반상제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양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상제는 이처럼 17세기의 호적 기재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17세기 위기 이후 대민 지배정책의 전환

(1) 국가의 대민 지배방식의 전환과 '여민휴식'정책의 철회

임진왜란 종결 이후 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전개되면서 전쟁으로 위축되었던 조선사회는 점차 정상을 되찾게 되었다. 사회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에 비례해서 국가의 대민 지배정책의 기조도 점차 변화되어 갔다. '여민휴식'정책이 철회되고 민간경제 및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이다. 17세기 국가의 대민 지배정책은 광해군, 인조 때와 효종, 현종, 숙종 때의 그것 사이에서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광해군 때의 정책을 살펴보면, 광해군은 자신이 왕세자로서 직접 전란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광해군 때 국가정책의 방향은 선조 때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광해군 재위 기간 동안 가장 개혁적인 정책으로평가되던 호패법이 양반층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시행 3개월 만에 폐기될정도였다. 광해군 때의 최대 성과는 경기지방에 제한적으로 실시한 大同法이었을 뿐이었다. 反正으로 집권에 성공한 인조 때의 정국은 광해군 때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인조 때의 정국운영도 광해군의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집권 초기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호패법이 丁卯胡亂의 발발을 계기로 철폐되고 있었던 사례에서, 인조 때

에도 '여민휴식'의 기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조 때 정국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 시기 실시된 양안과 호적의 실결수 및 호구 파악 수준을 검토해 보자.

인조 13년(1635)에 끝난 하삼도의 量田에 따르면 당시 양안상의 등재 토지는 임진왜란 이전의 88.7% 수준인 89만 5천 856결7에 불과했다. 그리고 인조 26년에 작성된 戊子戶籍에서는 임진왜란 이전 戶摠, 口摠의 각각 49.8%(44만 1천 321호), 36.8%(153만 1천 365구)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었다. 양안과 호적상에서 제시된 수치만으로 볼 때 임진왜란이 경과한 지50여년이 지나도록 전란의 피해는 극복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양안과 호적상의 수치가 실제 토지개간 정도나 인구의 증감 정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국가 공권력이 토지와 인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 즉 국가의 대민 지배력의 강도를 보여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민휴식'정책의 기조가 인조 때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정책의 기조가 전환기를 맞이한 시기는 효종 때였다. 北伐論의 대두와 적극적인 전쟁 수행 의지의 표출은 그러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경기, 강원도에 머물러 있던 대동법이 충청도와 전라도일대까지 확대 실시되는가 하면, 銅錢의 주조와 유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公奴婢推刷 사업의 실시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대민 지배강도는 이전 시기보다 한층 높아졌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기조는 현종 때에도 지속되어, 전라도 山郡에까지 대동법이 확대 실시되고 良役 자원의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인 奴婢從母法이 시행되기에 이를 정도였다. 이와 아울러 호적이 매 式年마다 작성되고 국지적이나마 양전사업 또한 계속해서 추진되었다. 당시 국가의 대민 지배력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효종, 현종 때, 그리고 숙종 전반기에 작성된 호적의 호구 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7)《}增補文獻備考》 권 141, 經界 1, 朝鮮.

^{8)《}增補文獻備考》 권 161, 戶口考 1, 歷代戶口, 朝鮮.

〈표 2〉 17세기 호적상의 호구 증가 추이

연 t	궤	가 호	인 구	호당 구수	비 고
인조 20	6년	441,321	1,531,365	3.47구	* 한성부에서 작성한 民口總數(533,720호,
(1648	3)				1,793,701구)와 오차가 많이 발생.
					* '與民休息'政策의 추진 시기.
효종 8	8년	658,771	2,290,083	3.48구	* 국가의 대민 지배방식의 변화:北伐論
(1657	7)				* 효종 즉위년(1649)《經國大典》의 5家1統
					法 시행안 제시, 효종 9년에 재확인.
현종 10	0년	1,313,453	5,018,644	3.82구	* 현종 7년(1666) 호적법을 엄격하게 운영 :
(1669))				脫漏者에 대해서는 全家徙邊刑에 처함.
					* 한성부에서 작성한 民口總數(1,313,652호,
					5,018,744구)와 오차가 크지 않음.
현종 1	3년	1,176,917	4,695,611	3.99구	* 현종 11·12년(1670~71)의 庚辛大飢饉을
(1672	2)				경험.
숙종 4	4년	1,342,428	5,246,972	3.91구	* 숙종 원년(1675) 5家作統法의 전면 실시.
(1678	3)				* 紙牌法의 실시.
숙종 1	9년	1,546,474	7,188,574	4.65구	* 숙종 7년(1681) 女子入籍法을 엄격하게 적용.
(1693	3)				
숙종 2	5년	1,293,083	5,722,300	4.46구	* 숙종 21 · 22년(1695~96) 乙丙大飢饉과 이후
(1699	9)				의 전염병 유행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

인조 후반기까지 임진왜란 이전 호구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호구수는, 효종 때에 접어들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불과 9년 만인효종 8년(1657) 戶數 49.3%, 口數 49.6%가 증가하고, 그로부터 12년 후인 현종 10년(1669) 호수 99.4%, 구수 119.2%가 증가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다가이후 점차 고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五家作統法의 실험 운영과 戶籍脫漏者에대한 全家徙邊刑의 적용과 같은 강력한 호구정책에 힘입어 현종 때에는 主戶로 등재 가능한 실제 가호에 근접하는 수치가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 1 가호당 평균 구수의 증가추세에서도 국가의 호구 파악 강도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즉 호당 평균 구수는 3.47명(인조 26년)→3.48명(효종 8년)→3.82명(현종 10년)→4.46명(숙종 25년)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고정되고있다. 호적 등재상에 나타난 호구수를 통해서 국가의 대민 지배력의 강도를측정할 때, 임진왜란 이후로부터 인조 때까지가 동일한 정책적 기조가 유지

된 시기로, 그리고 효종, 현종 때 이후 시기가 동일한 시기로 구분된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효종, 현종 때에는 임진왜란 이후 인조 때까지 국가의 주요 정책기조로 활용되던 '여민휴식'정책이 철회되고, 민간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한층 강화되는 시기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다.

효종 때 이후 국가의 강력한 대민 지배정책의 실시는 양반층에게는 결코유리할 것이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인 토지와 노비가 국가의 공권력 아래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세운영과 관련되는 한 국가는 양반층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다. 良役弊端의 모순이 점증하던 이 시기, 이 문제 해결에 임한 국가의 자세에서 그러한 사정을 읽을 수 있다. 양반층이 군역의 면역층으로 확인된 이후 군역, 곧 良役稅는 하층 양인층 일반이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신분세로 기능했다. 게다가 효종, 현종 때 이래 국가의 호구 파악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호적 등재 가호수가들어나게 되었다. 바로 이 때 대동법 실시 이후 자체 재원조달의 기반을 빼앗긴 각 관청들은 새로운 재원으로 양역세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효종 때 이후 양역세 징수와 관련된 각종 모순이 커져갔으며, 그와 관련해서 몰락하는 양인층도 증가하고 있었다. 16~17세기 전반까지 농민층에게 피해를 집중시킨 貢物防納 폐단의 자리를 양역세가 대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양역폐단이 중요한 사회모순으로 부각되자 국가에서는 양역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양역세를 양인층의 신분세, 곧 人丁稅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양반·상민 구분없이 모든 가호에서 부담하는 부세, 곧家戶稅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이 그 과정에서 대두되었다. 戶布論이 그것이었다.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호포론이라고 할 수 있는 愈繁의 호포론을 통해당시 양반층이 이해한 호포론의 내용을 살펴보자.

유계의 호포론은 士族戶에 대해서도 收布를 허용하되 양반층의 면역이라는 이전 시기의 추세를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대부

분의 양반층은 양역세의 가호세로의 전환을 촉구한 유계의 호포론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였다. 양반층은 일반 상민층과는 다른 특권 신분으로서 신분세인 양역세를 부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세운영과정에서도 일반 상민층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명분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양반층의 면역을 전제로 한 호포론은 실행에 옮겨질 수 없었다. 호포론의 논의과정에서 확인되듯이 효종 때 이후 국가에서는 대민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반층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회 주도세력으로서의 그들의 역할과 특권을 유지, 보호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2) 공동납체제로의 전환과 18~19세기 호적 운영의 변화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농법으로서의 移秧法이 삼남지방을 거쳐 경기도 일원까지 확대 보급되고 동일 경작지에서 이모작이 가능해지면서 이전 시기보다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바탕으로임진왜란 이전 불완전한 5일장 체제로 형성되던 場市가 각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5일장 체제로 정착되면서 상품화폐경제 또한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게다가 장시를 목표로 한 상업작물의 재배가 늘어나는 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인조 때 이래 시험 유통 단계에 머물러 있던 금속화폐가 숙종 때에 이르러 전국적인 시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토지의 재화로서의 가치를 상승시켜 토지자본의 비중 또한 높아져 갔다. 이 과정에서 16세기 이래 17세기 전반기까지 양반층의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지던 노비 노동력의 재산가치는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집약적 농법의 발달과 토지 생산성의 증대에 힘입어 16세기까지 선진적인 농법으로 인정받았던 粗放的인 大農體制 아래 경영되던 農庄의 중요성도 점 차 낮아졌다. 농장주의 감독 아래 노비 노동력을 동원하여 생산이 이뤄지던 강제적인 노동 형태, 곧 농장제가 역사적으로 해체되어갈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생산과정에서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보장되는 竝作制가 농 장을 대신하여 확산되었다. 병작제 아래에서의 作人은 主家의 인신적 예속을 받는 노비 노동력으로만 구성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노비 노동력의 중요 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이러한 정황 아래 양반층이 토지보다 노비를 주요 재 산으로 고집해야 할 이유가 소멸되어 갔다. 농장의 해체와 더불어 노비의 해 방 가능성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었다.

민간경제의 발달은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대민 지배정책의 기조였던 '여민 휴식'정책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여민휴식'정책 아래에서는 국가가 민간경제의 자율적인 성장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간이 활발하게 추진되는가 하면 향상된 영농조건 속에서 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 이래 농민층 몰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공물방납의 폐단이 대동법의 실시로 대부분 전세로 전환되어 가면서, 농민층의 재생산기반 또한 이전보다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어 갔다. 민간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약화, 유예 상황에서 민간경제의 제영역이 발전을 거듭할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민간경제의 제영역이 안정, 발전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가는 대민지배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국가 공권력 행사의 폭 또한 한층 넓어지게 되었다. 효종 때 이후 국가의 대민 지배강도를 보여주는 호적상의 호구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그러한 상황의 반영이었다. 현종 때를 거쳐 숙종 초기까지 이러한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되었다. 특히 숙종 초년에 실시한 5家統法과 紙牌法, 그리고 女子入籍法은 임진왜란 이후 대민 지배와 관련한 여러 방식과 운영을 집약한 국가정책이었다. 9 숙종 초반기는 국가의대민 파악 강도가 절정에 이른 시기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지만 숙종 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국가의 적극적인 민간개입 정책은 이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 타격은 다름 아닌 전지구적 현상으로 발생하여 조선사회에까지 강타한 '소빙기' 기후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때를 '17세기 위기'로 부른다.10' 소빙기적 기후 현상에 의해 직접

⁹⁾ 권내현, 〈조선 숙종대 지방통치론과 정책운영〉(《역사와 현실》 25, 1997).

^{10) &#}x27;17세기 위기'론은 일찍이 서양사학계에서 논의된 이래, 1980년대 이후 한국사학 계에서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 내용은 이 시기 이상저온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소빙기'현상이 도래했으며, 그에 따라 사회경제구조, 그 리고 정치사상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羅鐘一,

영향을 받은 이상저온, 냉해 발생은 효종 때 이후 점차 활성화되었지만 현종 때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고 있었다. 특히 140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현종 11~12년(1670~1671)의 庚辛大飢饉과 400만여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낸 숙종 21~25년(1695~1699)의 乙丙大飢饉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재난이었다. 이 시기 재난은 이상저온, 냉해로부터 기인한 흉년의 도래, 기근 발생, 기민 발생으로 인한 영양 결핍자의 증가, 면역기능의 저하,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현상으로 연결되면서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데 그특징이 있었다.11)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재난의 양상은 영조 전반기까지 지속되어 전염병의 창궐과 대유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12)

소빙기에 의한 자연현상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이러한 재난은 당시 인간들의 과학지식과 노력으로는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재난기에는 국가의 구휼, 구료사업 또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상저온과 냉해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그로 인해 흉년이 물러나고 전염병이 가라앉을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재난에 대한 인간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특히 전체 인구의 25% 이상의 인명피해를 낸 숙종 21~25년의 을병대기근과 이후 천연두・홍역의 피해까지 가중된 숙종 31~35년에 이르는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면서, 경제 및 사회 영역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15년여에 걸쳐진행된 이 시기의 대재난에 직면하여 국가는 대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가의 적극적인 대민 지배정책으로부터 간접지배 형태로의 전환이 그것이었다.13)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그동안 각 세력

^{〈17}세기 위기론과 한국사〉, 《歷史學報》94·95, 1982 및 李泰鎭, 〈小氷期'(1500~1750년)의 天體 現象的인 원인-《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록 분석-〉, 《國史館論叢》72, 1996).

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17세기 심각했던 재난기를 확인해 보면, 광해군 4년 (1612)~5년 6월, 인조 21년(1643) 4월~22년 2월, 효종 3년(1653)~4년 3월, 현종 원년(1600) 4월~2년 4월, 현종 5년 3월~6년 겨울, 현종 8년 4월~9년 봄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대재난으로는 현종 11·12년의 庚辛大飢饉과 숙종 21~25년까지의 乙丙大飢饉을 흔히 꼽는다.

¹¹⁾ 김성우,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의 사회상〉(《역사와 현실》 25, 1997).

¹²⁾ 趙 珖、〈19世紀 民亂의 社會的 背景〉(《19世紀 韓國傳統社會의 變貌와 民衆意識》),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2).

의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각종 개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사회의 장기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14) 임진왜란 이후 왕실 재정의 수요 증대와 관련하여 각종 폐단을 야기하던 宮房田의 折受 문제가 숙종 21년 乙亥定式으로 일단락되는가 하면, 황해도 지방에까지 대동법이 실시되는 등(숙종 34년;1708) 각종 개혁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 가장 어려웠던 개혁은 良役變通이었다. 그 이유는 조선 초기 이래 군역이 양인층의 신분을 결정하는 신분세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양역페단의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戶布法, 結布法, 그리고口錢法과 같은 大變通論은 良役稅를 家戶稅, 혹은 田結稅로 일원화시켜 신분세로서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17세기 전반 이래 국가가 추구해온 신분정책, 곧 양반층만을 특권세력으로 인정, 면역층으로 간주하던 신분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¹³⁾ 乙丙大飢饉이 한창이던 숙종 23년(1677) 이조판서 崔錫鼎은 10조에 이르는 時 弊 改革案을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부세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개혁안이 제시되었다(《肅宗實錄》권 31, 숙종 23년 정월 정묘).

⁽¹⁾ 田稅와 관련된 개혁안

¹조:量田을 실시할 때 敬差官을 파견하지 말고 수령의 책임 아래 양전을 추진할 것.

⁷조: 敬差官 踏驗을 폐지하고 중앙에서 각 도 별로 給災하여 수세액의 다과 를 살필 것.

⁽²⁾ 大同法과 관련된 개혁안

⁴조 : 황해도에 대동법을 확대 실시할 것.

⁽³⁾ 軍制 및 良役變通과 관련된 개혁안

³조: 良役弊端을 이정하기 위해서는 軍額을 감축하고, 奴婢從母法을 실시하여 양역자원을 확보할 것.

최석정이 제출한 개혁안은 국정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재난이 극심했던 당시 상황에서 곧장 정책에 반영될 수 없었지만, 향후 국가의 국정운영의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황해도 대동법은 숙종 34년에 실시됨으로써 결실을 보았고, 전세와 관련된 개혁안은 이후 赴王廳이 설치되는 계방식으로 발전했다. 양역변통론과 관련된 개혁안은 이후 釐正廳이 설치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결국 均役法 시행을 끝으로 일단락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소방기적 기후 현상의 도래와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대재난 상황에서 제기된 최석정의 시폐 개혁안은 국가의 대민 지배방식을 적극적인 형태로부터 간접적인형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매우 포괄적인 시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했다.

¹⁴⁾ 김성우, 앞의 글(1997b).

그런 이유에서 양역세 운영과정에서 班·常의 신분적 차이를 확인받으려 한 양반층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양역변통론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렇지만 17세기 중반 이후 18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활성화된 소빙기활동으로 이상저온과 냉해 발생, 기근과 전염병의 유행이라는 대재난의 약순환 상황에 직면하여 사회 분위기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당시 최대 모순으로 등장한 양역페단은 양반층의 저항에 부딪쳐 제대로이정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었다. 최고 집권자인 영조가 "양역세를 이정하지 않으면 조선이 망한다"고 인식할 정도로 양역변통 문제와 사회의 위기상황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 위기를 극대화시켰다. 이러한 혼란 상황과 위기의식이 증폭되어가는 가운데 양역페단에 대한 개혁작업이 가속을 받게 되었다. 그 첫 성과는 숙종 30년(1704) 釐正廳에서 개혁안으로 제시한 〈5軍門軍制 變通節目〉・〈水軍 變通節目〉・〈軍布均役 變通節目〉, 그리고〈校生落講者 徵布節目〉등이었다. 여기에서는 신분세로서의 양역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곧 반상적 모순으로부터 기인한 양역세의 편중 부과라는 문제에까지 접근한 것은 아니었지만, 군제 변통, 군액 감축, 군포의 균일화, 교생층의 낙강 수포 등 당시 현안이 된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그 해결점을 찾으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후에도 양역변통론은 국가 차원에서 계속 논의되어 숙종 37년〈良役變通節目〉으로 그 내용이 정리되었다.〈양역변통절목〉은 향후 양역 개혁 방안이나 부세운영, 그리고 국가의 신분정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영향을 끼칠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里定法의 실시와 관련된 문제였다. 이정법은 군역자원에 대한 국가의 개별 인신적 파악 방식을 지양하고 面혹은 里 단위에서 양역세를 공동납 형태로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15)이 방식은 국가가 이전처럼 부세징수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부터 면과 리를 단위로 한 공동징수방식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이 때 면, 리 단위로 확정, 부과된 부세는 군현→도→전국 단위로 집계되어국가재정의 세입재원으로 활용되었다.

¹⁵⁾ 金俊亨, 〈18세기 里定法의 전개-村落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震檀學報》 58, 1984).

따라서 이정법은 국가재정의 운영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국가에서 필요한 재원인 田・民을 양안과 호적 작성으로 파악한 후 그것을 기초로 전 체 국가의 재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제한하는 형태(量入 爲出), 곧 摠額制에 의한 재정운영이라는 점에서는 이전 시기의 재정운영 방 식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전 시기의 부세운영이 토지와 인민에 대 한 국가의 개별적인, 직접적인 파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이후 시기의 그것은 면, 리 단위로 징세 단위가 상향 조정되어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면, 리 단위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재원의 파악 방식에서 커다란 차 이가 있었다. 이후 공동납은 전세와 환곡에 이르는 모든 부세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그에 따라 人丁稅는 良役의 庚午摠(영조 26년 ; 1750), 公奴婢 의 庚申摠(영조 16년 ; 1740)에 의한 定摠法으로 시행되는가 하면,16) 전세는 比 摠制 방식으로, 환곡은 還摠制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17) 모든 부세가 공동납 형태로 징수되었고 그를 기반으로 국가재정은 총액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부세자원이 일정 규모 내에서 고정되어 총액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면. 리 단위 아래에서의 개별 인민과 토지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토지와 인민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미 치지 않게 되었음을,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공동납 형태로 부세징수방식이 전환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대민 지배정책이 전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양역변통안은 영조 26년 均役法의 실시로 최종 확정되었다. 양인층에 대해서 군포 1필만을 징수하고 그에 따른 부족한 재원은 田結稅와 給代 등을 통해서 충당시키고자 한 균역법에서는 신분제운영과 관련하여 2가지 목적이 관철되었다. 양인층에게는 과세부담을 군포 2 필로부터 1필로 줄여주고, 신분세로서의 양역세를 그대로 유지시켜 줌으로써양반층의 저항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양인층과 양반층 양자의 입장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양역세의 유지라는 목적을 관철한 양반층은

¹⁶⁾ 全炯澤, 〈公奴婢 推刷政策의 전환〉(《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 一潮閣, 1989).

¹⁷⁾ 金容燮, 〈朝鮮後期의 賦稅制度 釐正策-18세기 중엽~19세기 중엽〉(《韓國近代農業史研究》(上), 一潮閣, 1984).

향후 신분제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부족한 양역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한 수만큼의 양인을 재생산하는 문제에 대한 추인이었다. 즉 노비종모법의 허용과 公·私役 均一化 추세를 추인해준 것이다. '一賤則賤'法에 의해 노비가 확대 재생산되어 오던 오랜 관행이 노비종모법의 실시로 차단되고,18) 노비의 신공과 양인의 양역이布 1필로 균일화되면서, 양인층의 노비로의 전환 가능성은 줄어들었고 노비와 양인 사이의 신분적 계선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양반층의 면역층으로의최종 확인, 그리고 양인과 노비의 신분적 차별의 철폐를 전제로 실시된 균역법은 17세기 이후 대세를 이룬 반상제에 의한 신분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추인해준 것이기도 했다. 곧 良人齊一化에 기반한 조선 초기 국가의 국역 부과 방식이 이제 常民齊一化를 기반으로 한 그것으로 전환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19)

반상제에 대한 국가의 사실상의 추인은 이제 부세운영과정에서 더 이상 국가적 신분 규범으로서의 양천제가 기능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조선 초기 이래 국역 편성의 전제는 양천제였다. 그리하여 전체 인 민은 국역 편성 방식에 따라 양인과 천인으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반면 반상 제는 양천제와는 달리 사회적 현실관계를 반영하는 신분제였으므로, 여기에 는 국가의 국역 편성 방식이나 부세징수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 이래의 호적 기재 방식, 곧 양인 개개인이

¹⁸⁾ 平木實, 《朝鮮後期奴婢制研究》(지식산업사, 1982). 全炯澤, 〈公私奴婢 身分規制의 緩和〉(앞의 책).

¹⁹⁾ 金盛祐, 〈사회경제사의 측면에서 본 朝鮮中期〉(《大丘史學》46, 1993). 조선 초기 이래 국가의 국역체제 운영의 주요 기조는 齊民政策이었다. 이 때 국역의 주요 담당자는 양인층이었다. 즉 국역체제는 양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제민정책 아래 포섭시킴으로써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 초기 국가의 신분정책은 良人齊一化를 바탕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6세기 중반 아래 국역체제가 동요, 변질되면서 양반층은 국역에서 면제되고 비양반층이 국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비양반층, 곧 상민층이 국역의 주요 담당층으로 고정되면서 양인제일화에 기초한 조선 초기의 국역체제 또한 점차 상민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는 균역법 실시 단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추인받기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18세기 중반 이후 국가의 신분정책은 常民齊一化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 부담해야 하는 국역에 따라 職役을 부여하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나타났다. 부세징수방식이 공동납체제로 전환하고 양천제가 신분적 규정성을 상실하면서 호적상의 직역이 갖는 의미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던 것이다. 면,리 단위로 호구수의 총액,곧 戶摠과 口摠이 정해지면,그 다음 단계에서 누가 어떤 직역을 갖고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았다. 호총과 구총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양역세를 부담해야 할 직역을 책정,고정시켜두면 그만이었다. 그것은 정액 이외의 인민에 대한 호적상의 직역 기재가 이전보다 자유로워졌음을 뜻했다. 호적 기재시 직역의 冒稱,冒錄,그리고 조작이 그만큼 쉬워지게되었던 것이다.

공동납체제으로의 전환과 반상제의 사실상의 추인은 호적작성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적작성에 대한 양반층의 관심이 줄어드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호적은 해당 지역에 배당된 호총, 구총을 채우기 위해서 작성되고 있었을 뿐 호적상의 직역이 현실적인 사회관계를 반영하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호적작성의주체도 수령과 그 아래 행정 담당자인 書吏와 面任, 里任으로 고정되어 갔다.이제 수령과 서리, 그리고 면, 리임의 주관 아래 혹은 그들의 결탁 아래 호적상의 직역이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피지배층일지라도 직역상으로는 얼마든지 양반이나 중인의 직역인 幼學, 혹은 業武를 지칭할 수 있게 되었다.20) 신분과 직역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잦은 재난의 발생으로 納聚이 권장되면서 직역 유지의 엄격성은 더욱 의미를 잃어 갔다. 納聚帖은 지방 군현 단위로 강제 할당된 후 富民을 대상으로지방 차원에서 발급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상민층 일반의 관심과는 별개로수령권 차원에서 직역 상승이 강제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도 했다.

²⁰⁾ 崔承熙의〈朝鮮後期 身分變動의 事例研究-龍宮縣 大丘白氏家古文書의 분석〉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5)에 의하면 大丘白氏家亡 18세기 말 양인 신분에서 중인신분(業武)으로, 19세기 초·중엽에 다시 양반신분(幼學)으로 상승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목화를 서울에 내다파는 목화상인이었을 뿐이 다. 白承鍾의〈慶尚道 丹城縣 都山面 文太里의 私奴 與宗과 與龍 一家-1678년 부터 1789년까지-〉(《震檀學報》70, 1990)에 의하면 18세기 후반 중인층(業武) 으로 직역이 기재된 私奴 與龍 후손의 실제 직업은 礪石匠이었다. 호적상에 양 반호 혹은 중인호로 기재된 자들의 상당 부분은 이같은 冒錄層이었을 것이다.

호적상에 나타나는 직역의 모칭, 모록, 조작의 시기별 변동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존하는 각 지역의 호적상의 직역, 특히 幼學戶의 증가 상황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공동납체제로의 전환 전후 시기 호적상의 유학호 구성비⁽²¹⁾ (단위:%)

												(C ')	
	1678	1684 1687 1690	1711 1717	1729 1732	1744 1747 1750	1783 1786 1789	1795 1798 1801	1813	1825	1843	1858 1861	1867	1876
大丘府 (四方博)		3.8		11.5		28.0					63.1		
大丘府 (金泳謨)		4.3			9.8		17.9					30.7	
丹城縣 (李俊九)	5.4		14.2		22.3	29.1							
丹城縣 (井上和枝)									38.9				
彦陽縣 (任敏赫)			9.3				49.8	58.4			77.7		
鎭海縣 (武田幸男)									48.2	50.5			73.4

《표 3》에 의하면 양반직역인 유학호는 里定法 실시(1711년) 이후 시기~均 役法 제정(1750년) 이전 시기 사이에서 증가하는 현상이 목격된다. 이후 유학 호는 가속을 받으면서 급증추세에 있었다. 18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한 극심 한 직역 변동 추이는 免役戶인 양반호와 중인호의 급증, 有役戶인 양인호의 급감, 그리고 천인호의 소멸로 나타나고 있었다.²²⁾ 그 실례로 18, 19세기 울

²¹⁾ 이 〈표 3〉은 李俊九, 〈18·19세기 身分制 변동 추세와 身分 지속성의 경향〉 (《韓國文化》19, 1997)의 〈표 1〉各 時期別·地域別 幼學戶의 占有率에서 재구 성한 것임.

²²⁾ 호적 분석에 의한 이와 같은 결론은 四方博、〈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的觀察〉 (《朝鮮經濟の研究》3, 1938) 이래 대부분의 호적 연구자들 사이에서 동의를 얻고 있다. 그러한 연구 성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金容燮,〈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所有〉(《史學研究》15, 1963).

鄭奭鍾、〈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變化-蔚山府 戶籍臺帳을 중심으로-〉(《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一潮閣、1983).

金泳謨,〈朝鮮後期의 身分構造와 그 變動〉(《東方學志》26, 1981).

〈표 4〉 18. 19세기 울산지역 신분별 인구 구성비²³)

연 대	양 반 호	상 민 호	노 비 호	총 호 수
영조 5년(1729)	168호(26.3%)	382호(59.8%)	89호(13.9%)	639호(100%)
영조 41년(1765)	225호(41.0%)	313호(57.0%)	11호(2.0%)	549호(100%)
순조 4년(1804)	347호(53.5%)	296호(45.6%)	6호(0.9%)	649호(100%)
고종 4년(1867)	349호(65.4%)	181호(34%)	3호(0.6%)	533호(100%)

산지역 호적상의 신분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임진왜란 이후 최초로 작성된 丙午戶籍(선조 39년; 1606)에 의하면 울산지역은 양반호 2.5%, 양인호 50.5%, 천인호 47%로 구성되는 등 소수의 양반층에 의한 다수의 양인 및 노비 지배가 가능한 전형적인 사족지배구조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18세기 이후 이 지역 직역 변동 추세는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호적상의 변화상, 곧 免役戶의 급증, 有役戶의 급감이라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양상이 이정법 실시를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정법은 국가의 부세 운영 방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호적상의 직역 기재 방식에 이르기까지 일대 전환을 재촉했던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정법 실시의 역사적 의의를 읽을수 있다.

그러면 이정법 실시, 定摠法 확정 이후 시기, 곧 18세기 전반~19세기에 작성된 호적상의 호구 수치를 검토함으로써, 당시 국가에서 파악이 가능했던 호구수, 곧 호총과 구총의 총액,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18, 19세기 戶政의 운영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李俊九,〈朝鮮後期 兩班身分 移動에 관한 연구-丹城帳籍을 중심으로-〉(《歷 史學報》96·97, 1982·1983).

이러한 연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향촌사회사의 성과와 호적의 직역 변동 추이를 비교 검토, 실제 양반호의 구성 비율을 추적한 연구로는 李泰鎭, 〈朝鮮後期 兩班社會의 變化-신분제와 향촌사회 운영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 으로-〉(《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가 있다.

²³⁾ 鄭奭鍾, 앞의 글, 〈표 2-1〉 時代別 身分階層別 戶口比率表를 재인용.

연 대	가 호	인 구	호당 구수	비고
숙종 19년 (1693)	1,546,474	7,188,574	4.65	* 숙종 전반기 5家統法, 紙牌法, 女子入籍 法의 지속적인 추진. * 임진왜란 이후 호구 파악 수치가 정점에 도달.
숙종 25년 (1699)	1,293,083	5,772,300	4.46	* 숙종 21·22년 乙丙大飢饉과 그 이후의 전염병 유행으로 400여만 명이 희생.
숙종 31년 (1705)	1,371,890	6,138,640	4.47	
숙종 43년 (1717)	1,560,561	6,846,568	4.39	* 숙종 37년〈良役變通節目〉반포, 里定法실시. * 호적 작성 및 인민 파악 방식이 共同納 體制로 전환.
영조 2년 (1726)	1,576,598	7,032,425	4.46	
영조 14년 (1738)	1,662,219	7,040,480	4.24	* 영조 11년〈戸籍申飭事件〉을 반포하여 엄 격한 호적 작성 강조.
영조 29년 (1753)	1,772,749	7,298,732	4.12	* 영조 26년 定摠法의 실시, 均役法의 시행. * 常民齊一化 추세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영조 44년 (1768)	1,679,865	7,006,248	4.17	
정조 원년 (1777)			4.22	
정조 10년 (1786)	1,737,670	, ,	4.23	* 정조 6년 호적의 엄격한 관리를 지시.
순조 7년 (1807)	, ,	7,561,403	4.29	* 조선왕조 사상 호구 파악 수치가 정점에 도달. * 정조대 국가의 지속적인 호구 파악 노력의 결과.
순조 19년 (1819)	1,533,515		4.25	* 勢道政權이 들어서면서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
헌종 3년 (1837)	1,591,963	6,708,529	4.21	
철종 3년 (1852)	1,588,875	6,810,206	4.29	
고종 원년 (1864)	1,703,450	6,828,521	4.01	* 대원군 집권 이후 개혁정책의 추진.
광무 8년 (1902)	1,419,899	5,928,802	4.18	* 大韓帝國 시기 호적 작성의 결과.

〈표 5〉에 의하면 18세기 이래 조선왕조 최말기까지 국가의 호구 파악 수 치는 영조, 정조 연간에는 호수 170만여 호, 구수 720만여 명으로 고정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나. 호수 150만여 호. 구수 670만여 명 정도에서 등락이 반복하면서 한말까지 그 추세 가 계속되었다. 물론 당시 국가에서 파악한 호적상의 수치가 실제 가호수, 인구수를 직접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마지막 호구조사 사업(광무 8년; 1902)이 마무리된 지 23년 만인 1925년에 실시한 최초의 근대적인 인구조사 에서 인구수가 1천 800만여 명이었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선 최말기 까지 인구조사의 완전성은 40% 미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24) 조선시대 호적이 내포하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이 시기 호구 통계 수치는 17 세기 후반~18세기 전반에 확립된 호총과 구총이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 면서 이를 기반으로 호적이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국가의 호총, 구총의 확보 노력, 곧 국가의 대민 지배강도는 일정한 경 향성을 보이고 있다. 강력한 왕권의 회복을 통해 개혁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 던 영조, 정조 때에는 18세기 중반에 확립된 호총과 구총이 유지되었지만, 勢道家門에 의한 국정 전반의 전횡과 왕권의 약화, 그리고 지배층의 부정부 패가 확산되던 세도정권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호충 150만 여 호, 구총 670만여 명 수준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강력한 개혁정책이 추진된 대원군 집권기에 이르러 다시 수치가 올라갔지만 이후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그 수치는 더욱 낮아졌다.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호적상의 호구수치는 국가의 대민 지배력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호적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주목할 점은 숙종 21~25년의 乙丙大飢饉 이후 호구수는 완만하게 상승하여 戶摠은 숙종 43년(1717)경에, 口摠은 영조 29년(1753)경에 이르러 17세기 정점에 도달한 호적상의수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이정법(숙종 37년;1711)과 정총법(영조 26년;1750)이 실시된 시기 사이에 놓여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균역

²⁴⁾ 權泰煥・愼鏞廈、〈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一試論〉(《東亞文化》14, 1977).

법 실시 시기에서 국가가 최종 확정한 호총과 구총의 총액이 각각 170만여호, 720만여 명 정도에서 고정, 유지되고 여기에 근거하여 양역세가 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동납체제로의 전환과 균역법 실시가 확정된 18세기중반 이후의 戶政은 호총과 구총이 일단 정해지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중감이 이뤄지는 방향에서 운영되었다. 25) 호총과 구총이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호정운영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면역층의 급증, 유역층의급감이라는 호적상의 직역 변동 양상은 문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18세기중반 이후 현전하는 각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양반호, 중인호의 급증, 상민호의 급감이라는 직역 변동 양상은 공동납체제로의 전환 이후 변화된 호적 운영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나타난 사회현상이었다고 볼수 있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개혁이 정조 때를 기점으로 실패로 끝난 이후 세도집 권기로 접어들면서 부세운영과 관련된 三政 문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순을 노정시켰다. 이 때 삼정은 田政, 軍政, 還政으로 표현되지만 19세기 가장 중요한 모순으로 등장했던 부세는 환정이었다. 균역법 제정을 계기로 부세와 관련되는 한 신분모순은 크게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왕조 사상 신분모순이 가장 격렬했던 시점은 17세기 중반~18세기 중반까지의 약 1세기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소빙기의 활성화에 따른 자연환경적 위기상황의 도래와 반상제적 모순이 극대화되어 위기의 강도를 한층 강화시켰던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 양반층을 제외한 양인층과 노비층은 단일 신분으로 고정되어 갔으며, 부세운영 과정에서의 개별 인신적 규정성이사라지는 것과 추세를 같이 하여 호적에서의 신분과 직역이 상호 분리되어 갔다. 이처럼 양반층이 그들의 신분적 특권을 고수하고자 노력했던 바로 그시기에 그들의 지배구조를 부정, 해체시킬 새로운 요인들이 그 태내에서 싹터 나갔다.

^{25)《}增補文獻備考》 권 161, 戶口考 1, 歷代戶口 朝鮮.

3) 사족지배질서의 동요와 민중의 성장

17세기 전반 사족지배구조의 정착과 아울러 양반사회에 불어닥친 가장 중 대한 변화는 宗法의 본격적인 수용이었다. 이후 同姓村落이 형성되는가 하면 촌락 재산의 대부분이 宗家로 모아지는 등 異姓雜居村落, 男女均分相續과 같 이 오랜 관행으로 내려오던 양반층의 생활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26) 宗家型 地主가 새롭게 등장하고 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班村이 생겨난 것은 宗法 수용의 결과였다. 이러한 현상은 성리학의 심화에 따른 양반층의 성장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반층의 성장에 따른 자기 분열 과정이 기도 했다. 16세기 이래 국가 혹은 상민층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던 양반층이 17세기 전반을 거치면서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작게는 향촌 주도권을 둘러싸고 크게는 중앙 권력을 두고 他姓 양반층과의 본격적 인 분쟁을 시작한 것이다. 임진왜란 직후 경남우도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양 반층의 분열 양상은 17세기 중, 후반 무렵에는 서북, 양계지방을 제외한 모 든 지역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鄕權을 둘러싸고 발생한 鄕戰은 양반층의 주도권이 일찍이 확립된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 士族勢가 강한 여 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갔다. 향전은 당시 극렬하게 전개되는 중앙의 당 쟁과도 직, 간접으로 관련을 맺음으로써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그렇지만 양반층의 동성촌락으로의 집결 현상은 양반층의 상호 대립, 분쟁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앙법의 보급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라는 상황에서점차 경제력을 축적해나간 상민층과의 대응에 있어서도 양반층의 조직화는 필요했다. 16세기 이래 양반층의 상민 지배 방식은 農庄主로서의 신분적, 경제적 권위를 앞세워 作人 혹은 隷農을 지배하는 일대일 대응이었다. 이러한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鄕約, 鄕案과 같은 조직과 기구를 이용한 양반층 상호간의 유대와 결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양반층의 분열이 가속화되

²⁶⁾ 崔在錫,〈17世紀 親族構造의 變化〉(《韓國古代史研究》,一志社, 1987). 李樹健,〈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朝社會史의 一研究〉(《韓國史學》 9, 1987).

^{———,〈}朝鮮前期의 社會變動과 相續制度〉(《韓國親族制度研究》,一潮閣, 1992).

는 시점에서 그에 따라 향약과 향안이 변질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던 극심한 당쟁에 직, 간접으로 간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서, 이전과 같은 형태로는 상민층에 대한 지배가 불가능했다. 그 때문에 상민층에 대한 양반층의 공동대응방식을 대신하여 동성촌락에 의한 유력 성씨의 타성 지배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班村의 성세에 힘입어서야 상민 촌락 곧 民村에 대한 지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소빙기에 의한 17세기 위기의 도래 이후 국가의 대민 지배방식이 간접지배 형태로 전환하면서 상민층이 신분적 굴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가 한층 커져 갔다. 각종 부세가 공동납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신분세로서의 양역세는 公・私役의 균일화 추세 아래 과세부담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게다가 대동법 실시 이후 양역세가 頁物防納을 대신하여 국가 기관의 주요 수세원으로 등장하면서 양역 대상층의 관청 및 군문으로의 투속이 훨씬 쉬워졌다. 각 관청과 군문이 자체 재정 조달을 위해서 필요 재원을 경쟁적으로 유입하는 상황에서 양역 자원의 투속을 부채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일부가 서원, 향교, 군문, 관청 등에 冒屬하여 종래의 직역을 버리고 院生, 校生, 軍官, 胥吏 등을 冒稱함에 따라 중인 직역을 획득하는 자들도 늘어났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 이들의 사회적 성장이 가능하면서, 이들은 균역법실시 단계에서 양반층과 아울러 면역층으로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27)

공동납체제로의 전환이 함축하는 국가의 대민 지배정책의 전환, 곧 간접지배방식으로의 전환 이후, 양안과 호적의 작성과 부세징수의 책임이 지방관에게 대폭 위임되었다. 부세체제의 운영, 징수와 관련되는 한 수령권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 병작제로의 이행, 상품화폐경제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조응하여 재부를 축적하는 신흥 부민층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들은 구래의 양반층이 기피하던 面任, 里任職을 수행하는가 하면, 鄕廳에서 지방관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면서 점차 수령 행정의 하위 조직으로 포섭되어 갔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일부는 一鄕 양반층의 배타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던

²⁷⁾ 金盛祐, 〈조선후기 '閑遊者'層의 형성과 그 의의〉(《史叢》 40 · 41, 1992).

郷案入錄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양반층과 갈등, 대립하는 양상을 빚기도 했다. 그리고 사족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지방관의 지원 아래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구래의 양반층과 신흥 부민들 사이에서 향안입록과 향권 주도권의 향방을 둘러싸고 향전이 진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18세기 전반기를 경과하면서 양반층과 신흥 부민층 사이에서 향전이 격렬하게 진행된 지역에서는 儒・鄉 分岐 현상이 발생하고, 新・舊鄉의 대립과정에서 향안이 罷置되거나 더 이상 작성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28) 수령권의 지원 아래 향권 장악을 시도한 이들 신향층은 부세징수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守令一吏・鄕收奪構造 아래 편제되어 갔다.29) 신향층은 부세징수와 관련하여 대민 수탈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신향층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되면서 구래의 양반층, 곧 구향층은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종법 수용 이후 마을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친족제도 혹은 경제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면서 신향층에 대한양반층 상호간의 공동 대응이 거의 불가능했다. 중앙의 권력장악을 목표로양반층은 수많은 당파로 분기되어 격렬하게 당쟁을 벌이는가 하면, 一鄕의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타성 양반층과 갈등을 빚었다. 문중을 기초로 한양반층의 결집과 조직화 현상은 양반층 내부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대결구도에서 더욱 가속을 받아 동성촌락의 형성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양반층 상호간의 분열, 대립 양상은 수령권과의 긴밀한 유대 아래 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간 新鄕層과의 대결구도에서 효과적인 공동 대응기구의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전유물처럼 여기던 향안 작성과정에 지방관의 개입을 허용하는가 하면, 향권의주도권을 두고 신향층과도 힘겨운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립, 분산성을 극복하지 못한 양반층은 향교의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문중 書院과嗣字를 건립함으로써 門中을 단위로 일정 지역에서나마 그들의 지배를 유지

²⁸⁾ 金仁杰, 《조선후기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18, 19세기「鄕權」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²⁹⁾ 高錫珪, 《19세기 鄕村支配勢力의 변동과 農民抗爭의 展開》(서울大 博士學位論 文, 1991).

하려 했다.30) 18세기 이후 서원, 사우의 濫設이라는 현상의 출현 배경에는31) 이처럼 양반층에게 결코 유리할 것이 없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양반층과 상민층의 일대일 대응에서는, 특히 신향층과의 대립구도 아래에서는 그들이 양반층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분적, 경제적 우위가 확보될 수 없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32)

이처럼 18세기 중반을 경과하면서 구래의 신분질서가 동요하고 새로운 계층이 성장하는가 하면 구세력과 신흥세력의 대립, 갈등이 심화되면서, 17세기 이래 확립된 사족지배구조는 점차 동요하기에 이르렀다. 양반층의 경우 18세기 이후 老論의 일당 전제화 과정 속에서 관직을 독점, 정국을 전횡하는 소수의 閱閱家門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당쟁에서 패배한 대부분의 양반층, 특히 南人과 少論은 관직진출로가 구조적으로 막힌 채, 동성촌락을 기초로혹은 지주제를 배경으로 일정 지역에서나마 영향력을 행사하는 鄕班으로 자리잡아 갔다. 향반층 가운데 다수는 적장자상속이 강화되는 추세 아래 피지배층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우위의 확보라는 지난날의 영광을 상실하고 자영농민, 심지어 작인으로 전략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양반층이라고 해서 모두지주로서의, 혹은 특권층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아니었다.

반면 이 시기 새롭게 성장한 부민층은 수령권과의 결탁 아래 점차 부세행정의 말단 기구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갔다. 이들은 鄕所에 출입하거나향안입록을 시도하면서 구래 양반층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향권을 점차 획득해 나갔다. 특히 사족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향권의 주도권을 두고 양반층과 대립하는가 하면, 끝내 그들의 목적을 관철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정법실시로 인한 공동납체제로의 전환 이후 戶政 운영방식에 변화가 나타나면서호적상의 직역 조작이 한결 쉬워진 상황을 이용하여 상민층의 직역을 모칭하거나 모록, 조작하는 행위도 이전보다 많아졌다. 상민 직역으로부터 중인

³⁰⁾ 李海濬、《朝鮮後期「門中書院」研究-全南地域 事例를 중심으로-》(國民大 博士學位論文, 1993).

³¹⁾ 鄭萬祚, 〈17~18世紀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特히 士林의 建立活動을 中心 으로-〉(《韓國史論》2, 서울大, 1975).

³²⁾ 이윤갑,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지배층의 동향〉(《韓國學論集》18, 1991).

직역, 그리고 양반 직역으로 모칭하는 자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面任, 里任으로서 守令—吏·鄕收奪構造 아래 편입되어 대민 수탈을 담당했으며, 일부는 향안입록을 통해서 혹은 양반층과의 교류를 통해서 양반 사회에 편입되어 양반층으로의 실제적인 행세가 가능하기도 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양반층에 의한 배타적인 향촌 지배, 혹은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의 일방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양반층의 특권적 지위가 다방면에서 위협받는 상황에서 17세기에 확립된 사족지배구조는 동요하고 있었다. 李重煥은 18세기 중반 무렵의 각 신분 및 계층을 〈표 6〉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33)

〈표 6〉 18세기 중반 신분에 따른 계층 분류

신 분	계	층					
兩 班	士大夫	朝廷縉紳之家(大家・名家)					
	(下) 士大夫	郷曲品官・中正・功曹					
中人	庶孼(士庶)						
	雜色人(將校・譯官・算員・醫官・方外						
	閑散人)						
下人	良民・軍戶・京外吏胥						
	奴婢・公私賤						

이중환은 양반층의 극심한 자기 분열 및 분화, 중인층의 새로운 신분층으로서의 자리 매김, 양인과 천인의 동일 신 분으로의 고정 현상이라는 신 분구조의 변화 추세를 간파하 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 진행 되고 있던 사회현상으로서의 반상제의 고착화, 양반층의

분열, 호적상에서의 직역 모칭자의 사회적 성장, 公·私役 균등화 및 동일화와 같은 다양한 변화를 수용한 결과였다. 18세기 중반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계층별 신분구성은 이처럼 다기했다.

그렇지만 호적상에서 양반 직역과 중인 직역의 가호가 급증하고 상민 직역의 가호가 급감하는 양상이 대체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18, 19세기 조선사회의 신분구조가 본격적으로 해체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경상도 언양지역에서 그러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언양지역은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단 1명의 문과급제자만을 배출할 정도로 사족세가 미약한 지역이었는데도, 순조 13년(1813)에 작성된 호적에 의하면 양반호 59.5%, 중인호 9.2%,

³³⁾ 李重煥,《擇里志》總論.

상민호 31.3%로 나타나는 등 다른 지방의 직역 변동 추이와 큰 차이를 발견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18, 19세기 언양의 향촌사회는 남인 계통의 경주 김 씨, 동래 정씨, 경주 이씨, 밀양 박씨, 진주 강씨, 영안 송씨 등 6대 성씨와 노론 계통의 안동 권씨, 영산 신씨 등 2대 성씨로 구성된 8대 성씨가 이끌어 가고 있었다. 이들 8대 성씨들은 향교와 서원, 사우 조직을 통해서, 상호간의 교류와 결속을 도모하고 조직화를 시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신분적 우위를 유지해 나갔다. 따라서 언양 지역에서 이들이 주도하는 집단에 속하기 위해 서는 通婚을 바탕으로 하거나 향촌조직의 각종 有司職을 역임하는 형태로 주도 집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34) 이러한 양상은 사족세가 강한 지역에 서도 공통으로 나타난다. 전라도 순천의 경우 7大姓이 향교를 중심으로 서원 과 사우를 통제하면서 향권을 주도하는가 하면, 나주의 경우 토착세력과 유 입 사족세력인 '客班'이 향촌 주도권을 둘러싼 알력과 극심한 당색에 의해서 각 문중별로 서원과 사우를 설립. 운영하면서 향권을 분점하기도 했다.35) 따 라서 사족세가 강한 지역이든 그렇지 않은 지역이든 향촌사회에서는 그 사 회를 이끌어가는 大姓, 곧 유력한 양반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호적상에 양반 호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주도 양반세력에 끼어들지 못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순조 13년(1813)에 작성된 언양호적에서는 직역 변동 추세 이외에도 挾人, 挾戶가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호당 구수가 8.7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호적이었다.36) 대부분 호적상의 가호는 主戶만이 등재된다는 점, 그리고 호당 평균 구수가 4~5명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협인, 협호의 기재와 호당 구수의 상대적 고비율이라는 특징이 언양지역 호적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바로 19세기 전반까지 이 지역에 할당된 호총, 구총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정조 8년(1784) 언양

³⁵⁾ 鄭勝謨, 〈書院・祠字 및 郷校 組織과 地域社會體系(上·下)〉(《泰東古典研究》3・5, 1987・1989).

³⁶⁾ 李榮薫、〈彦陽戶籍을 통해 본 主戸-挾戶關係와 戶政의 運營狀況〉(《朝鮮後期 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지방의 호총은 1천 100여 호였는데, 雜與戶를 제외한 應役戶는 656호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들 응역호가 부담해야 하는 軍摠은 1천 780명으로서 1호당평균 3~4명의 군역을 져야 했다. 이와 같은 극심한 호총과 구총의 불비례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호총을 구성하는 주호뿐만 아니라 그 예하의 협호까지도 군역부담이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여타의 호적에는 누락되었을 협호, 협인이 순조 13년 언양호적에는 기재되었던 것이며, 그에 따라 1호당 평균 구수가 상대적으로 과다책정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 후기 양역변통의 추이와 호적 기재 방식의 변화. 양자의 상관성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양역변통 과정에서 양반층은 신분세로서 의 양역세 유지를 고집하는 한편 균역법에서 면역층으로의 법적 추인을 얻 어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대가로서 양반층은 이정법, 노비종모법의 실시 와 공·사역의 均一化 추세를 용인해줄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노비와 양 인의 신분적 계선이 사라지게 되었고, 면, 리 단위에서 결정되고 摠額制로 우영되는 호총과 구총이 유지되는 한 호적상의 직역 기재는 문제되지 않았 다. 양역변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숙종 30년대 이후, 특히 이정법의 실 시가 확정된 숙종 37년(1711) 이후 양반호의 급증, 중인호의 증가, 상민호의 급감이라는 호적상의 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언 양지역처럼 호총과 구총의 비례관계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호총과 구총의 비례관계를 맞추어야 했다. 여기에서 다른 지 방의 호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협인, 협호가 기재되는가 하면, 협인, 협호들 까지도 양역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언양호적은 부세징수, 특 히 양역세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는 호적의 오랜 관행이 파기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37)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언 양호적에서 나타나는 60%에 가까운 양반호 모두가 실제로 이 지역 향촌사 회를 주도하는 양반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호적에 양반호로 등재된

³⁷⁾ 主戶와 挾戶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언양호적은 이 지역에 할당된 戶摠과 口 摠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元戶를 인위적으로 분할, 등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호의 인위적인 분할, 곧 分戶 현상은 18세기 중반 무렵에 고정된 호총 및 구총의 총수를 채워넣을 수 없던 잔폐한 군현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던 방식이었다(《增補文獻備考》권 161, 戶口考 1, 歷代戶口, 朝鮮, 영조 35년).

수많은 양반호 가운데 향교와 서원, 사우를 장악, 운영하고 폐쇄적인 신분혼을 통해서 사회를 조직화시켜 나간 8大姓만이 언양사회를 주도하는 실제적인 양반층이었던 것이다.

18세기 전반 이래 공동납이 양역세 징수의 원칙으로 채택된 이후, 호적상의 지역 기재는 호총과 구총의 상호 비례관계 아래 조절되고 있었다. 호총과 구총이 일정한 비례관계로 징수되는 상황에서는, 따라서 양역세 징수가 원활한 지역에서는, 호적상의 직역이 免役層으로 기재되든 有役層으로 기재되든 문제되지 않았다. 18세기 전반 이후 양반호와 중인호의 급증, 상민호의 급감이라는 호적 기재의 양상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호적상에 양반호로 기재된 자들이 모두 그 지역 양반층으로 행세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향권을 행사하는 실제 양반세력은 향교나 서원, 사우를 장악하고 그들만의 사회를 조직화하고 있던 특정 성씨집단 뿐이었다. 그들이 해당 지역의 6대 성씨, 7대 성씨등등으로 불리는 세력이었다. 이들은 물론 동성촌락을 기초로 반촌을 형성하면서 여타의 민촌들을 장악하는 경제외적 강제, 곧 신분적 강제를 행사하면서 향촌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다.

사실상 신분제의 해체는 2가지 요소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것은 노동의 객관적 조건인 토지, 즉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인신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임노동자의 출현과정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19세기최말기까지 조선사회는 소유와 점유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했으며, 이 때문에 생산관계 측면에서 경제외적 강제가 작용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38) 그리고 이앙법의 확대 보급과 이모작, 상업적 작물의 재배 등을 통한 농법의 집약화 경향은 한편에서는 廣作을 가능하게도 했지만 그 대세는 경

³⁸⁾ 박명규는 개항 이전인 1872년과 甲午改革 이후인 1897년의 民狀 분석을 통해서 1897년에는 경작권의 移作, 奪耕에 대한 畓主 권한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점유권보다는 소유권 우선이라는 자본주의적 배타적 소유권이 갑오개혁 이후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 시기에는 여전히 점유권과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명규,〈19세기 후반 향촌사회의 갈등구조-영광지방의 민장 내용분석〉,《韓國文化》14, 1993).

지 규모에서의 상·하층의 영세균등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39) 그리고 경영분해 측면보다는 소유분화 형태로 富益富 貧益貧이 재편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과정과는 거리가 먼, 토지 집적에 의한 지주제의 확대·강화 추세가 또다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40)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후기 농촌장시를 중심으로 하는 상품생산과 사회적 분업관계는 이전 시기보다 훨씬 발달하고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자연경제의 일부분으로서 농가의 자급자족적 생산구조를 補足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41) 게다가 19세기 세도정권기에 접어들면서 국가의 대민 수탈 강도가 더욱 강화되어 자영농민층일지라도 가중된 부세를 다내고 나면 잉여생산물의 축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심지어 국가의 대민 수탈 양상은 호적 등재시 양반호로의 기재를 강제하면서 幼學錢을 강제 징수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42) 19세기 이후 幼學戶의 급증은 상민층의 신분상승 욕구 이외에도 신분상승을 강제하는 지방관의 대민 수탈 행위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 분화의 결과이든 대민 수탈로 인한 재생산 기반의 박탈의 결과이든 농민층이 토지로 방출되어 향촌사회를 유리하더라도, 이들을 흡수할 새로운 산업기반이 조성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지역사회로부터 이탈된 유리 민들은 재래의 산업기반인 농촌사회로 재흡수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19세기 최말기까지 조선사회의 현실은 경제외적 강제로서의 신분 제가 기능을 상실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 호적상의 양반호의 급증 현상과는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주도 세력은 동성촌락을 중심으로 향교와서원, 사우를 조직, 운영하면서 향촌의 주도권을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향촌주도 세력의 주요 기반이었던 서원과 사우는 국가의 빈번한 금지령과 훼철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었다. 대원군 집권기에 전국적으로 47개 소만을 남겨두고 대대적으로 훼철된 서원들은 대원군 실각 이후 계속

³⁹⁾ 李榮薰,〈19세기 農民經營의 分化趨勢와 階層別 存在形態-慶尚道 南海 龍洞宮 庄土에 관한 事例分析-〉(《韓國의 社會와 文化》13, 1990).

⁴⁰⁾ 都珍淳,〈19세기 宮庄土에서의 中畓主와 抗租〉(《韓國史論》13, 서울大, 1985).

⁴¹⁾ 李憲昶、《開港期 市場構造와 그 變化에 관한 研究》(서울大 經濟學科 博士學位 論文, 1990).

^{42) 《}慶尚道監營啓錄》고종 6년(1869) 12월.

해서 향촌사회를 주도하는 지배세력들에 의해서 복설되었으며, 서원과 사우의 복설을 주도하고 운영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향혼사회를 실제로 주도하고 있었다. 향촌사회를 주도한 이들 양반층이 일본 제국주의의 주권 침탈에 맞서 저항하는가 하면 의병활동을 주도함으로써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려 노력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金盛祐〉

2. 민중의 사회적 결속

1) 공동체 질서와 민중

우리 역사상 민중이란 말이 전면에 부각된 것은 동학농민전쟁의 1차봉기에서였다. "兩班과 富豪 앞에 고통받는 민중과, 方伯과 守令 밑에 굴욕받는 무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일어서라"1)고 하는 茂長起布 당시 띄운 격문의 한 구절이 민중의 위치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때의 민중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집단적인험에 의해 모순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층으로서, 이전의 백성의식이나평민의식에서 한 단계 나아간 민중의식을 갖추어 나갔던 사회세력이라 하겠다.2) 그런데 이들 민중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후기이래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켜 온 저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조선 후기 민중이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결집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나설수 있었던 것은 장기간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기존 지배층이 중심이 된 공동체적 질서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며 조직적인 기반을 넓혀왔던 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중이

¹⁾ 吳知泳, 《東學史》(永昌書館, 1940), 112\.

²⁾ 鄭昌烈, 〈백성의식, 평민의식, 민중의식〉(《현상과 인식》 5-4, 1981).

어떻게 공동체적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18, 19세기에 걸쳐 그 구각을 깨고 나오는가, 그리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었던가 하는 점들 을 살피기로 한다.

기층민들은 신앙활동 혹은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찍부터 공동조직을 형성하였으며 그러한 조직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다져나가고 있었다. 이같은 공동조직의 조선 전기 모습들은 주로 지연·혈연적인 배경이 강한 洞隣契나, 민속 고유의식을 주관하고 생활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하던 香徒, 淫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층민들의 조직이 당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선조 6년 (1573) 경연석상에서 향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좌의정 朴淳이, "우리 나라 풍속이 서울로부터 시골구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을의 계모임이 있어서 (洞隣之契 香徒之會) 사사로이 약속을 맺고 서로 검칙 규제한다"3)라고 언급했던 데에서 집작해 볼 수 있다.

향도는 기층민의 공동조직이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살피는 데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 향도는 고려 전기까지만 하여도 祈佛 단체로서의 성격이 중심이었으며, 그 규모는 하나의 군현 주민이 거의 대부분 그 구성원이 될 정도로 큰 것이었다. 고려 전기의 농업은 아직도 기술적으로 휴한법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제약을 가진 사회는 인력 통제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녀지역 공동체로서의 향도의 구성이 그와 같이 대규모적인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휴한법 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조방적 농업경영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투입기간은 짧으면서도 한 차례의 동원 규모는 커야 하는 조건 때문에 농업경영에 투입되는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4)

향도조직은 고려 말, 조선 초의 사회전환 과정에서 변질되면서 그 형태도 고려 전기적인 신앙결사, 자연촌 중심의 공동체적 유대를 기반한 수호신앙 형태로서의 淫祀, 祀神香徒契類, 喪葬扶助的인 洞隣契類, 乞人組織類 등으로

^{3) 《}宣祖實錄》 권 7, 선조 6년 8월 갑자.

⁴⁾ 李泰鎭, 〈17·8세기 香徒 조직의 分化와 두레 발생〉(《震檀學報》67, 1989).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조선 전기의 다양한 향도류 조직들은 지배층에 의해 불법 혹은 자의적인 사조직으로 매도되면서 그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촌락조직으로서의 명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5) 대체로 조선 전기의 향도조직들은 그 조직의 범위를 자연촌으로 하고 있었으며 구성원도 상천민이 중심이 되었다. 또한 이들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행사들도 공동노역이나 마을의 잡역, 그리고 무속적인 전통이 가미된 마을제사, 관혼상장의 공유와 부조가 주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휴한법의 극복과 연작상경법으로의 이행이라는 농법상의 커다란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층민들의 각종 조직은 16세기 사람세력이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됨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16세기에 들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람세력은 조선 전기의 향촌질서를 성리학적인 것으로 재편성하여 가면서 자신들 중심의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갔다. 조선 초기부터 지연과 혈연을 바탕으로 同甲契・門人契・族契 등을 만들어 왔던 사족들은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洞契를 만들었다. 동계를 만들어 나갔던 주 목적은 지주제를 기반으로 한 농촌경제의 안정과 부세체계의 장악을 통한 상하신분질서의 유지였고, 이를 위해 사족간의 결속뿐만 아니라 하민을 통제할 수 있는 洞案・洞規・洞財 등과 같은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층민들의 여러 조직들은 일차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 그들 나름의 전통적인 동린적 기반을 잃고 동계에 흡수되어나갔다. 하층민에 대한 통제는 동계의 約條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대체로 하층민에 대한 신분적・경제적 지배 예속관계의 확립 또는 재강화를 모색한 것이었다.

물론 사족이 하층민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계급적인 이해만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층민들의 소농경제는 양반지주층의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인 착취로 인해 극히 불안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향촌사회의 안정은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체제를 유지

⁵⁾ 李海濬、〈朝鮮時代 香徒의 變化樣相과 村契類 村落組織〉(《省谷論叢》21, 1990).

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그에 따라 사족층은 하층민 안정, 즉 소농경제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양보를 모색하였다. 동시에 하층민 통제의 방법으로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契員奴婢, 家門奴婢라 하더라도 각 노비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公議, 僉議에 의해 公事로 治罪하는 방식을 채책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반층의 공동대응은 당시 향촌사회에서 하층민의 저항이 심각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저항에 대해 당시 지배층이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동계 등을 기반으로 하여 재지사족은 군현 단위에서 그들 중심의 一鄉 지배체제를 운영해 나갔다.

그런데 성리학 중심의 사족 지배질서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층민조 직이 동계나 향약조직의 하부구조로 편입되거나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그같은 조건 속에서도 조선 전기 이래 기층민의 생활문화 기반 위에서 존속되던 향도, 음사 등의 촌계류 조직들은 명맥이 끊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림 중심의 정치지배구조가 정착되었던 16세기의 경우 이들 기층민 조직들은 지배이념과 근본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생활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지배계층의 하민 지배를 속에 잠행하게 된다. 향도에 대해 成 俔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데서 저간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풍속이 날로 야박하여 가지만 오직 香徒만은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대체로 이웃의 천민들끼리 모여 회합을 갖는데 적으면 7~9인이요 많으면 혹 100여 인이 되며, 매월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고, 상을 당한 자가 있으면 같은 향도끼리 상복을 마련하거나 관을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하며, 혹은 상여줄을 잡아주거나 무덤을 만들어주니 … 이는 참으로 좋은 풍속이다(成俔,《慵齋叢話》권 8. 葬儀).

16세기에 형성되고 있던 사족중심의 향촌 지배질서는 16세기 말, 17세기 초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크게 파괴되고 동요하게 되었다. 이에 사족들은 양란이 끝나자 洞契를 복구하고 鄕案을 중수하는 등 서둘러 향촌사회의 재건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새로 복구된 동계의 성격은 전쟁 전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上下合契의 형태가 새롭

게 모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6) 물론 16세기에도 하층민이 동계에 포섭되고는 있었지만 이들이 별도로 下契를 구성하였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동계복구를 위해 하층민의 동원이 절실해지는 가운데 하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었다. 그러한 점은 민인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비록 관념적이기는 하지만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거나 '하인, 노비들도 비록 명분은 다르나 天命之性을 함께 받았다'라는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하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였던 16세기의 인식과는?) 분명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양란 후 향촌사회의 복구과정에 민인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난중에 보였던 민인들의 광범한 저항이 민인들을 일방적인 통제의 대상으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하였을 수도 있다. 사족들은 이미 임진왜란 전부터도 민인들에 의해 그 지위를 위협받고 있었다. 임진왜란 전에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재지사족들조차도 그들의 가문노비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통제를 위해 洞令을 특별히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인의 저항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더욱 격화되어 안동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土賊을 방어하기 위해 義軍이 조직되고 있을 정도였다.

이제 향촌사회는 사족의 결속만으로는 민인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족들은 상하 결속의 조직으로 동계를 재편, 중수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위축된 자신들의 권위를 만회하고자 하였다. 사실 강력한 동족적 기반과 지주, 토착세력으로서 그들이 과거부터 누려왔던 동 단위에서의 사족으로서의 지위는 아직 흔들리지 않았고, 그 지위를 통하여 사족들은 상하합계 형태로 하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17세기에 일반화되는 상하합계 형태의 동계, 동약들은 바로 이같은 상황 아래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주변의 수개 촌락을 동계체계 안에 묶어둠으로써

⁶⁾ 朴京夏, 〈倭亂直後의 鄕約에 대한 硏究〉(《中央史論》 5, 1987).

^{7) 1568}년에 만들어진 退溪의〈溫溪洞規〉의 洞令에는 '本主나 他主에게 무례불손한 자(노비), 무리지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자, 천방에서 벌목하는 자, 밭에 모래흙을 흘려보내는 자'등 통제 대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해서는 鄭震英,〈16세기 安東地方의 洞契〉(《嶠南史學》창간호, 1985) 참조.

대외적인 대표성과 지위도 과시해보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었다.

동계조직이 마련되면서 기존의 촌계류 조직들은 상당 부분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7세기 후반 당시에도 향약이 실시되지 못하던 곳도 있었다. 숙종 10년(1684) 漢城府에서 下契(香徒契)를 혁파하고 향약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보고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향약 실시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大臣의 함에 따르면 私契를 혁파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 오늘날 향도를 혁파하고 하나같이 鄕約之規로써 서로 送喪을 돕게하는 것이 그 뜻은 진실로 좋으나, 각 방 각 리에는 호의 많고 적음이 있어 (향약을) 두루 다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각 리에 士夫戶가 많고 庶民戶가 적은 경우에, 사부의 喪에는 동리 서민이 당연히 스스로 힘써 그것을 봉행할 것입니다. 그러나면서의 상에 있어서는 사부가에서 비록 約法에 따라 奴를 보내준다고는 하지만, 그 중 힘있고 사나운 노복은 반드시 약법을 따르지 않고 폐단을 일으킬 것이므로 제압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로 백성들이 (향약을) 크게 불편하게 여겨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대저 대신의 뜻도이와 같으니 각 방 각 리에서 향약으로써 서로 돕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그에따라 시행토록하는 방법이 실제 사의에 합당할 것입니다(《承政院日記》303책,숙종 10년 3월 23일).

위 한성부의 보고내용은 상당수의 지역에서 향약(동약)이 실시되기도 하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향도계와 같은 것이 여전히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상장부조나 공동노역 등과 같은 극히 부분적인 자연촌락 단위의 자체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던 향도류 조직들은 동계가보편화되면서 그 하부 단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계, 동약구조 속에서 확인되는 村契, 小契, 下契, 私契 등의 조직들이 바로 그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촌계류 조직이 유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능은보다 위축된 상태였다. 그만큼 동계조직이 촌락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던 것이다. 18세기 官主導의 향약이 사족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던 동계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도 그같은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16~17세기 사족 중심 동계질서의 성립과정은 향촌사회 내에서의 기흥민의 성장과 한계라는 양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합계의 형식을 이끌어내고 동계 내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던 점은 분명 기흥민 성장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이 민인들의 적극적인 저항에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향촌사회에서 지배권을 재강화하려는 사족층의이해 속에서 주어졌다는 점에서 기흥민들은 지배층이 중심이 된 공동체적질서 속에서 제약되고 있었던 것이다.

2) 18세기 향촌공동체의 변화와 민중조직의 활성화

(1) 면리제의 강화와 민

사족중심의 향혼질서는 18세기에 들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족들의 물적 토대의 동요, 축소였다. 조선 중기에 재지사족이 향혼사회에서 향론을 주도하고 각권력기구를 장악하면서 그들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해 나갔던 배경에는 토지와 노비를 비롯한 물적 기반이 있었다. 여러 자료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향혼사회에서 대부분의 토지는 사족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공동체적 질서가 그것을 떠받쳐 주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농경영의 지속적인 성장에따른 노비의 자립, 노비도망 등으로 인해 사족들의 그러한 물적 토대는 크게 위축되어 나갔다.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던 전호들의 항조운동 역시 사족들의 경제기반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 시기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기초한 소농경제의 성장, 농민층 분화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기존 사족지배체제의 물적 토대를 근본으로부터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사족세력의 약화와는 반대로 민인들 가운데에는 17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과정에서 경영면적의 확대, 상업적 농업의 경영, 임노동의고용 등을 통해 부농층이 새로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수령과 결탁하여 新鄉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들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사족과의 마찰을 초래하게 되었고 나아가 향춘사

회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향촌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던 변동은 기존의 권력기구상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족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鄕所가 수령의 시녀로서 아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향안을 모체로 한 鄕會, 鄕規(鄕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향안은 17세기 이래 복구되어 나름대로의 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18세기 중엽을 전후로 하여 관권에 의해 罷置되거나 그 추가입록이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향안이 존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濫陞이 수령에 의해 조장되고 재정확보의 명목으로 이용되는 것이 고작이었다.8)

물적 토대가 크게 약화된 사족들은 국가의 부세정책과 그 운영에 있어서 도 점차 배제되어 가고 있었다. 당시 변동하고 있던 경제질서, 신분 계급질 서 속에서 국가는 일정한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총액제로 방향을 전환 시키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족들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던 것이다. 향 촌에서 敎化뿐만 아니라, 향회, 향소를 통하여 현실적인 향촌통제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는 부세행정과, 그 실무자인 이서까지 그들의 수중에 장악하던 위치에서 밀려남으로써 사족들의 현실적인 기반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족들은 族契・門契를 강화하거나 同族部落을 형성하 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었고.9) 그러한 기반 위에서 나름대로 의 연대를 구축하고도 있었지만 더 이상 향론을 주도하고 향권을 그들의 손 에 가두어 놓을 수는 없었다. 그에 따라 향회의 성격도 향촌지배층의 통치기 구의 성격이 크게 탈색된 채 수령의 부세행정의 자문기구 정도로 변질되었 다. 이러한 변화는 향촌사회에서의 권력이 사족의 손을 떠나 官權과 이를 둘 러싼 吏・鄕層에게로 집중되어감을 의미하며, 기존 사족지배체제의 동요와 권력구조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10) 이 과정에서 이ㆍ향에 새 로운 계층이 참여하게 되는 소지가 마련되었으며, 민인들이 향권에 접근할

⁸⁾ 金仁杰,〈圣선후기 郷案의 성격변화와 在地士族〉(《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知識産業社, 1983).

⁹⁾ 李海濬、〈朝鮮後期 長興傍村의 村落文書-湖南地方 한 同族部落의 組織->(《邊太 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三英社,1985).

¹⁰⁾ 金仁杰, 《조선후기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18, 19세기 「鄕權」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다.

민인들의 향권 접근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18세기에 들어와 행정조직으로서의 面里制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면리제는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는 方位面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결속력이 컸던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여러 개의 자연촌을 묶은 광역의 지역을 근간으로행정질서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의 지속적인발전에 따라 자연촌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숙종 초에들어 자연촌의 전반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면리체제가 형성되었다. 국가는 면리기구 운영의 담당자인 면・리임에 사족을 임명함으로써 촌락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행정직임에 대한 수령의 침학이 심하여 사족들이 이를 기피하자 일반민은 면・리임에 참가함과 동시에 그러한조직들을 통해서 그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갔다.11) 다만 당시향혼사회 권력기구에 참여하고 있던 새로운 층들이 자신들의 재생산기반을 갖추는 데는 미치지 못했으며, 정부 또한 그같은 현실을 관료체계 안으로 수렴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자연촌락을 단위로 형성되는 '里中公論(公議)'은 일반적으로 사족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지만 거기에도 기층민들의 입장은 상당히 반영되고 있었다. 이 시기 촌락사회에는 官에서 임명한 尊位, 里任 계열과는 달리 洞論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판단되는 頭民, 頭頭人이 있었다. 각각의 명칭과 그 담당자는 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었지만 존위는 사족층이 담당하고 있었던 데 반해 두민은 '大小頭民'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상민으로서 '老成稍知人事者',12)'有根着身手膂力者'13)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順天과 같은 지방에서는 농민층만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으로 공의를 형성해가는 촌락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사족이 있는 촌에서도 평민이 공의 형성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전국적으로

¹¹⁾ 金俊亨、〈18세기 里定法의 展開-村落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震檀學報》 58. 1984).

^{12)《}治郡要訣》(內藤吉之助編,《朝鮮民政資料-牧民篇》)13,正風俗,20\.

^{13) 《}備邊司謄錄》 217책, 순조 29년 12월 11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자연촌락의 성장에 따라 그것의 독자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새로운 면리편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촌락 내에서의 민인들의 입장도 점차 강화되어 갔던 것이다.

위와 같은 촌락 내부의 상황은 숙종 37년(1711) 〈良役變通節目〉14)의 반포에서 법제화된 '里定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양역 부과의 기능 일부를 촌락에 맡기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이정법은 사족의 통제권을 인정하면서도 민인들 간의 자체적인 규제에 의해 양역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촌락 내에서의 일반민의 지위가 강화되어 가는 것을 인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농층 가운데 일부가 향권에 접근해 가고 洞論을 모으는데 민인의 역할이 커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민인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이익을 관철시키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두민의 경우를 보더라도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임의대로일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처럼¹⁵⁾ 그 자율성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당시 일반 민들은 중세국가의 부세체계에 있어서 말단조직으로서의 면·리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고, 여러 무거운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면·리 단위의 共同納이 강화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형태로 面會, 里會 등이 서서히 권력구조상에 표면화되고 거기에 일반 민의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하였던 것은 당시 민의 성장과 그들의 진로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2) 동계의 변화와 분동

16~17세기의 재지사족은 당시 변동하고 있던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그들 중심의 지배체제를 강화,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동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재지사족 중심의 동계와 그 운영원리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를 거치면서 일정한 변모를 보였다. 그 변화는 우선 洞 재정의 운영면에서 나타나고 있었 다. 대체로 이전까지는 동내에서의 상호부조는 구성원들이 그때그때 현물을

^{14) 《}備邊司謄錄》 63책, 숙종 37년 12월 25일.

^{15)《}政要》(內藤吉之助 編,《朝鮮民政資料-牧民篇》1, 軍政(里定節目), 41쪽.

수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洞穀을 마련하는 경우라도 그것의 利殖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그 목적도 동민의 구제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들면서부터는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여 그 이자를 가지고 비용을 충당한다던가, 경우에 따라서 契畓을 마련하여 거기에서 생기는 賭只로 각종 비용을 충당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게되었다. 그에 따라 취식의 목적이나 대상도 달라져 나갔는데, 취식의 주대상이 '勤實下人'이 된다거나 빈한한 양반은 거기서 제외되고 있던 것은 그 자금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었으며, 그 목적도 이전까지의 동민 구제로부터 洞內補役이라던가 講舍의 설립 등으로 달라져 나갔다.16)

동계는 위와 같이 그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 역시 달라져 가고 있었다. 16~17세기의 동계는 上, 下契員을 모두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제 18세기에 이르면 상계원들만의 조직으로 크게 제한되어 폐쇄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물론 상계원 자체 내의 갈등, 예를 들면 嫡庶 간의 갈등이나 빈부차의 격화등이 그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터이지만, 그보다는 소농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취해진 정부의 향촌사회통제책, 즉 공동납의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주제가 발전하고 소농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토지소유관계나 동내의 계층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이제 기존의 재지사족을 매개로 해서만은 부세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는 효과적인수세행정의 일환으로 기존의 동계를 하나의 수세 단위로 재편하고, 그 내부의 구성원리를 유지시킨 채 공동납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숙종 37년(1711) 법제화된 '里定法'은 전세에서의 比摠制, 환곡에서의 里還, 잡역세에서의 공동납 등과 일련의 관련을 갖고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사족들이중심이 된 洞契, 洞約 조직들이 부세의 단위로 활용되어 17세기 말, 18세기에 있어서 동계는 수취체계의 하부 단위로 고정되어 갔다.

공동납의 실시는 어느 단계까지는 효과적일 수 있었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¹⁶⁾ 金仁杰, 〈조선후기 鄕村社會統制策의 위기-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震檀學報》58, 1984).

촌락기반 위에서 유지될 수 있던 촌락간의 유대를 근본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공동납은 신분제, 지주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취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농경제가 발전하고 그로 인해 사회 계급관계가 변질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원만하게 운영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동납의 강화가 기존 향촌사회 자치조직이라 할 동계를 하나의 수세 단위로 고정시켜 나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결국은 향촌사회 내부의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되는 것이었다. 즉 동계조직 내에 묶인채 잠재되어 있던 상·하민간의 대립, 촌락간의 대립 등과 같은 다양한 갈등이 표면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동민간의 갈등은 인적 조직으로서의 동계조직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上下台契'의 형태로 조정할 수 있었던 동계가이제 18세기에 들어오면서는 下契를 포섭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이 그 점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동계에서 하계원의 참여 기피나 下契案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하계가 동계의 통제권 밖에서 존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18세기에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촌락사회에서 곧바로 상실된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변화를 기초로 정부에서 관주도의 향촌통제책을 강화시켜나가는 가운데서도 사족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던 것은 아직도이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당시 재지사족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또다른 자구책을 강화해 나갔다. 17세기 말, 18세기 관주도의 향약에 그들이 참여했던 것이 전자의 예라고 한다면, 동족촌락을 형성하고 족계·문계·학계등을 강화하거나 義莊을 설치하고 자신들의 족적 결합을 다지고자 했던 것은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 동약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였던 대구 夫仁洞 洞約이 18세기 말에 이르러 하민들의 요구에 의해 그 기능이 축소, 상실되어 갔던 것은 그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¹⁷⁾

¹⁷⁾ 鄭震英,〈朝鮮後期 鄉約의 一考察-夫仁洞洞約을 中心으로-〉(《民族文化論叢》 7. 1982).

이러한 사정은 관에서 주도하였던 동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이시기의 각 동(리)은 사족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18세기 후반, 특히 광범위하게 작성되고 있던 牧民書類의 하나인《七事問答》의 文狀條에 '分洞'이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던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18)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겠지만 사족지배질서가 유지되던 16~17세기의 촌락은 대개 일정한 지연적 공동체로서 수개 또는 10여 개 자연촌락들이 하 나의 연합체로 묶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족들이 집거하 거나 영향력 있는 사족이 거주하는 '洞'과 '里'가 중심촌락으로 이들의 전 체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리와 동에 집거하였던 사족들은 동계나 동약 등을 통해 거의 常賤民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하위의 수개 또는 10여 개의 마을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광역의 리 밑에 묶여 있 던 자연촌들이 바로 18세기 후반 이후 독자적인 조직과 규모를 지니면서 독 립된 마을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19) 이같은 촌락사회 구조상의 변모가 야기 된 데에는 상품경제의 발달. 화폐경제의 진전과 같은 여러 요소가 지적될 수 있지만 주목되는 사실은 촌락 분화과정에서 하민들의 分洞 요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제 일반 민들이 사족들이 주도하던 향 촌지배체제의 모순과 한계성에 직면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모색하기 시작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사족지배체제의 굴레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동질 감을 확인하고 또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 에서 결속력을 강화하여 나가게 되었다. 이는 이후 민인이 변혁의 주체로 기 능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었다.

(3) 민중조직의 활성화

16~17세기의 향촌사회에서는 사족들을 중심으로 동계나 동약이 광범하게 실시되고 있었지만 향촌조직이 사족들의 동계나 동약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 〈18, 19}세기 士族의 村落支配와 그 해체과정-대구 부인동 동약의 분쟁을 중심으로-〉(《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18)《}七事問答》文狀 二十八條.

¹⁹⁾ 李海濬, 앞의 글(1990).

아니었다. 사족지배체제가 강화되는 속에서도 기층 촌락민의 생활문화 기반위에 존속하던 향도, 음사 등의 촌계류 조직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물론 그러한 조직이 향촌사회에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사족들에 의해그 기능이나 역할이 크게 위축되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 향촌사회에서 사족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하층민의 요구에 따라 분동이 널리 이루어지면서 민중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

그간 향촌사회의 운영원리로 작용해오던 동계·동약이 더 이상 기층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의 촌계류 조직들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18세기 말, 19세기의 향촌사회에는 각종 조직들이 발달하고 있었다. 19세기 중엽 전라도 무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평가가 있다.

우리 東國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촌마다 계가 있고 각 집안마다 계가 있으니, 이르기를 科契・筆契・墨契・紙契・洞契・射契라 하여 그 이름이 다단하다. 혹 서로 모여 추렴해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며 웃고 즐김으로써 한때 비용을 다 써버리고 하룻나절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오직 宗契와 譜契가 효의 정신에 가까운 것이나 이 또한 순정치 못한 것이다(《裳谷八里孝 稧鄉約節目》茂州, 철종 7년).

또한 19세기 전반 李圭景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契라는 것은 王逸少의 蘭亭修契에서와 같이 상서롭지 못한 것을 떨치는 모임이 아니다. 옛날의 里社와 같이 一里가 서로 모여 식리하는 것을 계라고 한다(예를 들면 漁夫契・四亡契・四寸契 등과 같이 일에 따라 이름을 붙인다)(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권 36, 香徒辨證說).

이와 같이 민간에서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각종의 계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의 자료들은 일반 민들 사이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계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사에 관련된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農契・農具契・牛馬契, 상례를 치르기 위해 결성된 喪契・喪興契 등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이 시기의 지역 단위의 계는 사족주거의 동(리) 아래에 예속되어 있다가 조선 후기 촌락의 분화과정에서 독립되어 나온 하위의 마을을 기본단위로 하여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보인

다. 이같은 조직이 각 촌락사회에서 갖는 위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는 관련자료가 많지 않아 명확히 밝혀내기가쉽지 않다. 그러나 당시 일반적으로 계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취식하는 것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또 동제나 당제 등과 같은 공동체적인 祭儀 역시 계조직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민중조직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공동노동조직으로서의 두레이다. 두레조직은 수전농업지역에서 17세기 후반 이후이앙법이 보급되고 있던 상황에 조응하여 발달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구성의 기본단위를 각 동, 촌락으로 하고 있던 두레는 황두군과 같은 이전의 직과법 아래에서의 공동노동조직이 벼농사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것이었다.

두레는 조직의 구성에서도 지주층의 참여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작·소작 농민을 성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사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자·소작농만을 구성원으로 한 것은 황두군도 마찬가지였지만 두레는 지주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賃銀 관계로 처리하여 농업경영으로부터 봉건적·신분제적 강제를 배제하였던 것이다. 신분제적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전의 노동조직도 바라는 것이었을 것이나, 조선 전기에서처럼 그것들이지방관의 직접적인 통제대상으로 오르거나, 16~17세기 사족층이 주도하는 동계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었다.20) 그 것은 두레 자체의 향상된 경제력을 발판으로 보다 더 공고한 결속을 발휘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었다.

두레는 집약적인 노동력의 필요와 생산력의 발전을 토대로 이전의 공동노동조직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촌락사회 내에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그 비중은 18세기에 稻麥 이모작이 보급되면서 더욱 높아져 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레조직은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의 조직이었던 데에다지주층의 간섭을 배제하고 있었으므로 두레를 통한 공동노동 과정에서 농민

²⁰⁾ 李泰鎭, 앞의 글(1989).

들의 자의식은 고양될 수 있었다. 이것은 이후 촌락공동체적 질서체계와 연 관관계를 지니면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마을의 두레와도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조건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 민중들이 합법적 공간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일정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체로 이전까지의 민중저항의 일반양상은 유리, 도망이었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저항 수단이었으며, 조직적인항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농촌에서 유리된 층이 중심이 된 도적이나 명화적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18세기에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일층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 이 시기에 이르면 농촌에 토착해서 사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수령이나 감사를 상대로 等訴, 議送을 제출하는 것이 빈번해졌다. 여기에서의 중심 내용은 토지, 부세문제 등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 활발하게 작성되는 목민서에 여러이유로 제기되는 소장에 대한 처리, 특히 등소 처리에 관한 '套書', 즉 사건의 처리방식에 관한 형식이 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생활기반을 가지고 토착해서 사는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할 만큼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민의 요구가 증가되자 국왕의 입장에서도 16세기 중엽까지 '四件事', 즉 자신이 직접 刑을 받는 일, 父子 관계를 가리는 일, 嫡妾을 가리는 일, 良賤을 분간하는 일 등 4가지의 경우에만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밖의 사안은 擊錚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그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 民隱 전반에 대해 호소함을 허락하여 합법적 공간에서의 민의상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하였다. 21) 이같은 조치로 인해 일반민인들이 수령, 감사, 나아가 비변사에까지 자신들의 집단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 당시 민중은 합법적인 등소 외에도 집단행동을 통한 '호소'도 많이 행하였는데, 이같은 방법을 통해 부세감면, 민전침탈, 상업적 이익 등 공동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이같은 등소와 호소

²¹⁾ 韓相權、《朝鮮後期 社會와 訴寃制度-上言・撃錚研究-》(一潮閣, 1996).

를 통한 집단항쟁의 경험이 이후 '민란'과 같은 대중투쟁의 토양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18세기의 일반 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조직이 발전하고 있었고, 민중의 집단적 목소리가 사회 전면에 나타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변화되는 조건에 상응하여 촌락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운영원리를 제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하여 관권이 깊숙히 침투하고 있었고, 향촌사회 내부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기층민들은 각종 목적계나 두레를 자체적으로 결성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자치력과 결속력을 다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획득된 자치력이나 결속력은 이후 사족이나 관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었다. 또 계나 두레의 조직은 대중동원을 위한 조직으로 바로 전화될 수 있었다. 때문에 정부측에서는 민인들의 집단행동을 흔히 '作契'라는 용어로 표현하였고, 그것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날 경우 '結黨作亂'으로 크게 문제삼게 된다.

18세기 '결당작란'의 주체는 일반 민인, 아전, 토호 등 다양하였고, 그것에 동원되는 층이 주도자의 족당이나 수하인이 일반적이었지만, 그 가운데 토호가 주체가 된 경우에는 다수의 민인을 동원하고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영조 17년(1741) 밀양부에서 발생한 '汨董契'사건을 들 수 있다.22) 이는 밀양지방의 토호가 수백 명의 민인과 더불어 돈을 모아 골동계라는 조직을 결성한후 수령을 바꾸고 향임을 차출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여 큰 문제가 되었던사건이다. 정조 6년(1781) 함창 토호가 수령의 체형에 반발하여 무리를 모아단체를 결성하고 돈을 거두어 수령축출을 도모한 것²³⁾ 역시 마찬가지 사건이다. 토호들이 주도하였던 사건들에서 민인을 모으는 데 계를 이용하였던 것은 당시 계조직이 민중의 결속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잘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체를 통해 결집된 힘은 수령을 교체할정도로 향촌사회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촌계류나 두레가 촌락사회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촌락사회 내에 정착 하지 못하고 있던 부류들이 조직화되고 있던 현상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 《}英祖實錄》 권 53, 영조 17년 정월 갑술.

^{23) 《}正祖實錄》 권 13, 정조 6년 정월 신해.

조선 후기의 사회변화와 함께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치는 기간에는 농지에서 유리되거나 도시로 유입된 하층민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유망민은 어느 시기에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 시기에 오면 그 수가 크게 급증하여 정부 내에서도 유망민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잃고 도성이나 읍성 주위에서 거주하던 이들은 생계의 수단으로, 혹은 자위적인 집단조직으로 향도계를 조직하여 잡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에는 도적화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수한 목적의 조직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17세기 말 서울 지역의 하층민 중심으로 결성되어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되었던 '劍契'이다. 검계는 유망하여 서울로 흘러들어온 자들이 중심이 된 조직으로서, 여기에는 평민뿐만 아니라 사대부가나 궁가의 종까지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이 어떤 행동목표를 지니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사로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조직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한편 노비들 가운데에는 자기 주인뿐만 아니라 양반 일반을 대상으로 살육과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殺主契'를 조직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²⁴⁾ 이들의 성격 역시 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17세기 말부터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영조 초년의 戊申亂을 거치면서 무신란에 동원되었던사회세력의 경험과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의식이 확산되고, 18세기에 들어 더욱 증폭되는 가운데 明火賊과 같은 보다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항쟁활동으로 전개되어 나가게 되었다.²⁵⁾ 물론 이들 세력이 사회적 전망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바로 변혁세력의 주체로 부각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이후사회변혁세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17, 18세기에 사족이 주도하던 동계조직의 모순과 한계성에 직면하면 서 기층민 조직들은 자체의 새로운 자생력과 진로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것

²⁴⁾ 鄭奭鍾,〈肅宗朝의 社會動向과 彌勒信仰〉(《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一潮閣, 1983).

²⁵⁾ 영조 연간에 전개된 명화적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서는 韓相權, <18세기 前半 明火賊 활동과 정부의 대응책>(《韓國文化》13, 1992) 참조.

은 이후 기층민이 중세 말기의 변혁주체로서 사회 전면에 나설 수 있게끔 하는 토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19세기 민중의 사회적 결속

(1) 향회의 활용

19세기 전반의 촌락사회는 그 내부에 각기 지향을 달리하는 인적 결합관계, 조직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과거의 조직이 생명력을 상실하는 속에서 일부 조직이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강화되기도 하고 그와는 달리 새롭게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던 농민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族契나 門契조직 등이 전자의 예라고 한다면 두레조직, 樵軍조직 등은 후자의 대표적인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어느 조직논리도 당시 변화된 조건 속에서 촌락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배논리로까지 전화된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전환기에 힘의 공백을 틈타 관권의개입이 노골화되면서 촌락사회는 관의 깊숙한 통제 아래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관주도의 통제체제는 곧 위기를 맞게 된다.

19세기에 들어와 향촌사회의 위기 정후는 여러 부면에서 표출되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관주도 향촌통제책이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던 모순이 현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령과 그에 결탁한 이서층과 향임층, 심지어 면임·이임들까지도 각종 수탈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었으며, 그 규모나 방법도 18세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다양해졌다. 26) 그리고 그에 편승하여 조금이라도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수탈을 면하기 위해서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농민층 분해, 상품경제의 발달, 화폐의 전국적 유통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촌락민들을 묶어맬 수 있는 공동체적 끈이 느슨해지는 가운데, 이제 공동체적 강제로는 더 이상 당시 폭발하고 있던 민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²⁶⁾ 高錫珪, 《19세기 鄕村支配勢力의 변동과 農民抗爭의 양상》(서울大 博士學位論 文, 1991).

이 시기 향촌사회의 각 사회세력들은 사회모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기존의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장은 각자가 처한 입지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 때로는 집단적 차원에서, 합법적 공간에서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도 부차적이고 개별적인문제부터 당시 사회가 안고 있었던 기본 모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같은 문제제기가 이 시기에 이르면 단지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에서 당시 지배기구였던 鄉會가 크게 활용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향회는 당시 합법적 공간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던 기구였다. 향회는 본래 儒鄉層과 같은 지배층들이 참여하여 결속을 다지고 향촌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 사족의 향권장악이 불가능해지게 된 상황에서 향회는 과거와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없었다. 향회의 성격변화는 특히부세수취 방식의 변화와 직접 관련되어 나타났다. 당시 부세납부는 전세에서의 比摠制, 군역에서의 里定法, 환곡에서의 里還(統還)法 등과 같은 공동납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동내에 부과되는 부담분을 관권의 전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했다. 이 때 주민들의 의사는 향촌사회 내부의 조직을 매개로 모아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향회가 이용되었다. 18~19세기에 향회가 土類(儒林)들의 儒會, 수령의 부세행정의 자문역할을 하는 향회를 지칭하였던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후자의 경우로 사용되고 있던 사실은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적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향회의 성격변화는 그 구성원이 바뀌는 데서도 기인하였다. 신분적인 특권이나 혹은 향촌에서 누리고 있던 권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층과는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 유향층에 포함됨에 따라 향회의 구성원은 질적으로 변해나 갔다. 그런데 향회의 구성원이 일률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一鄉이라 하여 주로 향안에 기록된 자들이 중심이 되기도 하였지만, 유향이 구성원이 될 경우

그것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新儒(別儒)와 新鄕이 그 성격을 주도하는 방향 으로 바뀌어 나갔다. '大小民齊會'라 하여 양반·평민의 구별이 없이 참여하 는 향회도 나타나고 있었다. 혹은 이와 더불어 향회와 座首, 別監 등의 鄕任 과 面, 里任 頭民들이 그때그때 안건의 내용과 편의에 따라 회의를 가졌던 경우도 있었다.27)

향회에 새로 참여하게 되는 계층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류는 '饒戶'라 불리는 부민층들이었다. 요호부민들은 농민층만이 아니라 상인층 혹은 광산 을 경영하여 부를 축적한 자 등 그 출신기반이 다양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토호나 대민들이 누리고 있던 면세의 혜택을 입는 자들은 아니었으며, 오히 려 풍부한 경제력으로 인해 18세기 이래 부세수취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담 을 지고 있던 부류들이었다. 요호들이 일방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던 것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데서 연유하는 측면이 컸다. 때문에 그들은 賣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향권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향권에 접근함으로써 요호층의 기대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는 않 았다. 수령은 오히려 향임 임면을 구실로 그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과외의 수취나 부정기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은 여전히 요호 층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기존의 체제에 편승하여 신분상승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령을 비롯한 지배층에 말려들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강요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부민층들의 사회적 성장의 한 방편이 되고 있던 장치들이 결국 요호층들에 대한 침탈의 도구로 확인되면서, 그리고 결국 그 부담이 일반 농민층에게로 전가되는 가운데 본질적인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갔다. 관과 요호부민들의 대립, 관권에 기생하면서 그 맹위를 떨치던 吏鄕層 과 민간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었다.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체제 내에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던 부민층이, 그리 하여 자신들 스스로가 중세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

²⁷⁾ 安秉旭、〈朝鮮後期 自治와 抵抗組織으로서의 郷會〉(《聖心女大論文集》18, 1986). -,〈19세기 壬戌民亂에 있어서의 「鄕會」와「饒戶」〉(《韓國史論》14, 서울 大, 1986).

도 했던 이들이 자신의 성장의 한계를 자각하게 되면서 19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선두에 서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당시 사회체제에서 모든 부담을 떠맡아야만 했던 민인들과 함께 그들은 19세기 중엽 구체제를 타도하고자 하는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이 향회에 참가하게 된 이들의 이해관계가 기존의 지배층과 동일할수는 없었다. 이들이 향촌사회에서 어느 정도 발언권을 얻었을 때 일차적으로는 기존 지배층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했다. 그에 따라 향회는 점차 민의를 결집하고 대변하기 시작하였다. 향회에서는 불법수취를 강요하는 관권에 대항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으며, 등소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합법적 공간이 되었다. 이전 시기까지 재지사족층의 지배기구였던 향회가, 그 구성원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동이 있게 되면서, 단지부세결정 과정에서 관권을 대변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역으로 기층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게까지 된 것은 이 시기 민중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까지 향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매우 다양하다. 충청도에서는 전세의 結價를 정하기도 했으며, 洪州의 경우 江主人의 호소에 따라 급가방법을 둘러싼 민원을 처리하고, 德山에서는 鄉廳 보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賣鄕까지도, 茂長에서는 의연을 핑계삼아 부민들에게 權分을 강제하는 일까지 향회가 주관 논결하였다. 처음에는 향회가 단순히 여론 참작 기구 정도에서 출발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서는 수령이 읍정의 대부분을 향회의 논의나 동의하에 수행할 만큼 그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었다. 수령에 대한 인사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읍정을 향회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28) 한편 순조 말경 천안에서 都結價를 놓고 수령과 민간의 대립이 나타났을 때 수령이 임의적으로 결가를 올리자 이에 항의하여 향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관리가 治罪까지 당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던 것은 이후 향회가 저항운동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향회는 민중운동의 중요한 기간조직으로 전화되어 나갔다.

²⁸⁾ 安秉旭, 위의 글(a), 113쪽.

그러나 이와 같이 기존의 향회를 이용하는 방식은 상당한 한계를 갖는 것이 기도 하였다. 향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신분적으로 대부분 양반에 속하는 지배층 이었고 계급적 속성상 그들은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丁若鏞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19세기 전반 향회 성격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鄕中의 不肖子弟 수십 인, 부리기 쉬운 자를 객관에 모이게 한 후 돼지를 잡고 술을 걸러 잔치를 연다. 그들을 불러 말하기를 향회에서 役價를 올리는 일을 의논해야겠다고 하면 모두 좋다고 한다. 누가 감히 다른 의견을 내겠는가. … 舊令이 가고 新令이 이르면 또 전과 같이 하여 열 섬을 더하니, 시간이지나면서 극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역가가 늘어나는 까닭이다(丁若鏞, 《經世遺表》권 7, 地官修制, 田制 7).

정약용이 지적한 향회는 수령에 의해 역가를 올리기 위한 기구로 이용되고 있던 향회인 것이다. 이와 같이 향회는 여전히 大民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관권의 시녀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일반적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향회가 민인들의 의사와는 대립적 위치에 있던 경우도 적지않았다. 그에 따라 민인들은 기존의 향회와는 별도의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²⁹⁾ 이하 1862년 삼남 각 지역에서의 농민항쟁의 조직기반에 대해서는 金仁杰, 〈朝 鮮後期 村落組織의 變貌와 1862년 農民抗爭의 組織基盤〉(《震檀學報》67, 1989) 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한 상황은 1862년 농민항쟁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민인들이 별도의 모임을 결성했던 예는 '진주민란' 과정에서 잘 나타난 바 있다. 당시 항쟁 초기에는 관주도의 향회와는 달리 대민들이 중심이 되어 水 谷市에서 별도의 都會를 갖고 여기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쟁의 주체들은 실제 항쟁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에서는 수곡도회와는 별개로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거사계획과 조직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조직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樵軍'이었으며 이들의 동원을 위해 한글로된 통문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초군조직은 동 단위로 편제되어 있었고,이들의 동원에는 면임과 동임 및 동내 頭民들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기도하였다. 항쟁의 주체들이 기존 향회와는 다른 도회라고 하는 별도의 집회를가져야 했던 것은 기존의 향회가 민중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향회의 성격으로 인해 기층민들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가져야 했던 사정은 尚州의 경우에서 보다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상주에서는 小民들이 면임 金日福을 중심으로 항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즉, 상주에서는 대민들이 여러 차례 향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점을 비판하면서 소민들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의 모임이民會라 불렸음이 상징적이다. 물론 그 진행과정에서 표면상으로는 朝官兩班을 狀頭로 삼아 결가, 환곡, 군포 등의 문제를 관과의 타협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生員・進士 등 대민을 장두로 삼는 것보다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했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표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소민들이 주체가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의 예들은 농민항쟁과정에서 향회가 이용되고 있었으며 그 유형은 요호들이 주도하는 경우, 소민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예는 결국 민인들이 자신의 계급적 기반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 위에서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서게 되며, 민중이 기존 지배기구를 자신들의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 민중조직과 농민항쟁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관의 부세자문기구로 변질된 향회가 민중의 의사를 결집하고 농민항쟁의 조직기반으로까지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모순으로 느끼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주도층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이 민중을 동원할 수 있었던 객관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었던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새롭게 편성된 里洞조직의 기능강화라던가, 두레 등과 같은 농민조직의 출현등 기층민들이 기존 지배층 중심의 공동체적 질서를 벗어나 새롭게 자신들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민중적공동체 자체가 모두 농민항쟁의 조직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공동체적 질서가 민중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민중이 그것을 통해 자신의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아울러 앞서 보았듯이 18세기 이후에는 삶의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층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같은 민중의 결속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上言・擊錚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나듯 17~18세기를 거치며 합법적인 공간에서 민인들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되고 있었으며, 민인들은 등소나 호소또는 作亂을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30)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식이 개인적인 차원 또는 친족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고 조직적인 차원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음에 비해, 이제 19세기에 들면서 민인들은 개인적인 호소의 차원에서 벗어나 당시의 폐단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민중의 조직적인 움직임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향회가 여러 계층의 의사를 결집하는 기구로 운영되던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향회가 당시 민인들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민인들은 향회와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

³⁰⁾ 韓相權, 앞의 책, 228~247쪽.

을 보호해야 했으며 그러한 역할은 역시 村契나 두레와 같은 전래의 민중의 공동체적 조직이 담당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순조 26년(1826) 경주 민인들이 장기현감을 공격한 사건을 기록한 자료에는 '契民輩'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거사과정에서 민인들의 촌계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31)

농민항쟁에서 민중조직이 이용되고 있던 예는 앞서 본 진주항쟁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 봉기의 주도자들은 面任 · 洞任 등에게 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에 따라 훈장 · 면임 · 동임들이 자신의 관장하는 향촌내 공동체조직 내에서 농민을 선발하고 있었다. 이 때 민인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항쟁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闕錢을 거두거나 혹은 가옥을 파괴하겠다는 협박이 가해지고 있었는데, 이는 항쟁과정에 촌락의 공동체적 구속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향촌내 공동체조직이 봉기주도층과 연결됨에 따라 많은 민인들이 항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농민층 내부에서는 계층분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존의 조직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농민항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초군조직이 그것이다. 樵軍은 본래 생계유지를 위해 나무를 베어다 땔감으로 팔아서 살아가는 존재였다. 대다수의 초군은 생계가 어려워 머슴이나 婢夫로 살고 있었지만 소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작지를 경작하는 이들도 있었다. 각종 수탈이 농민의 안정을 위협하는 당시 상황에서 초군은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농민은 초군의 모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 초군조직은 일반 농민들이 공동노동을 위해 두레를 이용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그 규모는 대체로 10여 명 정도로 구성되었지만 100여 명이 넘는 큰 조직도 있었고, 樵魁・座上・頭 目 등으로 불리는 자들이 조직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초군들 은 대규모적인 공동노동조직을 통하여 집단화하고 세력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³¹⁾ 한명기, <19세기 전반 반봉건항쟁의 성격과 그 유형>(《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194쪽.

농민과 초군들은 공동노동조직으로 자체적인 결합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서로 계급적 기반을 같이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강한 결집성을 갖춘채 향촌내 지배층인 토호·양반들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봉기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모습은 1862년 농민항쟁 당시 함양 지방과같은 경우 사족, 향원들이 중심이 되어 군현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도 50여 명의 咸陽民이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사실, 전라도 일대에서는 뚜렷한 주모자가 없이도 500~600명 혹은 300여 명씩 둔취하면서 宣撫使의 巡行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던 사실 등에서 확인된다. 또 懷仁에서 초군들이 士夫家에 저항하여 봉기하고 있는 것이라던가,懷德의 초군 수천 명이 읍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淸州의 반촌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두 읍회나 향회 등을 매개하지 않고서도 항쟁이전면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862년의 농민항쟁의 조직기반은 다양하였다. 항쟁의 주도층과 관련해서 유형화해보면 첫째 향원(사족, 양반토호)들이 민중을 동원하는 경우, 둘째 기존 향회에 반발하는 주도층이 향회와는 별도의 모임을 통하여 항쟁을 이끌어나가는 경우(진주가 이같은 예에 속한다), 셋째 별도의 와주가 있어서 항쟁을 주도하는 경우, 농민(초군) 스스로 집단을 이루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32) 이 때 그 조직기반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앞의 두 경우는 각 동(리)에 거주하는 동민들이 동원의 대상으로서 기존의 향촌조직이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뒤의 두 경우에는 보다 민중적 기초가 강한 것이었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군현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진주의 경우 초군조직 자체도 초군청이라는 지방행정기구의 지휘 아래에 있던 공적 조직이었다는 점에서33) 당시 민중 일반이 처한조건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다.

조직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1862년 농민항쟁의 주류적 경향은 향회와 같은 기존의 지배기구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기본 동력

³²⁾ 金仁杰, 앞의 글(1989), 66쪽.

³³⁾ 金容燮,〈朝鮮王朝 最末期의 農民運動과 그 指向〉(《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92), 363等.

이 되었던 일반 농민, 그들과 연결된 초군조직 등과 같은 민중조직이 아직은 공동체적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중은 자신들의 결속에 기초한 항쟁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자각하고 한단계 높은 항쟁의 주체로 전화해 갔다. 향회에 기반한 농민항쟁이 결국 당시 사회모순의 담당자였던 농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대변할 수 없었기때문에 단기간의 항쟁으로 결말나고 있었음은 당시 사회모순의 기본 성격이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잘 말해 주는 것이었다. 1862년 농민항쟁의 준비와 초기 단계에서는 지주, 부농 등 진보적 요호부민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항쟁의 발전과정에서 그들이 탈락하고 주도권이 빈농 초군에게 넘어가면서 보다 철저한 '반봉건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은 이제 민중이 주체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1862년 농민항쟁 과정을 통해서 농민들은 물론 당시 항쟁을 주도했던 사회세력이 자신들이 처한 객관적 조건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역량의 한계를 체험하게 됨으로써 다음 단계의 항쟁을 준비하게 된다. 이후 변혁운동이 지배계급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단순한 경제투쟁의 단계를 뛰어넘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 나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었다.

〈金仁杰〉

3. 민중운동의 사상적 기반

1) 성리학에 대한 사상적 도전

(1) 성리학의 교조화

조선 후기의 사회는 농업 생산력의 진전을 기본 동력으로 하여 사회 전분 야의 변동이 촉진되었다. 그 결과 봉건체제의 모순이 더욱 드러났고,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려는 民衆運動이 두드러졌다.

정치적으로는 숙종 때의 환국 정치기를 거쳐 영조·정조 때의 탕평기로

접어들었다고 하나, 정치집단 내부의 대립과 갈등은 상존하였다. 사회경제적 으로는 농업 생산력의 향상으로 농민층 분화가 촉진되었으며, 상품화폐경제 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신분제의 동요로 이어지면서 여러 사회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의 지배이념이 강화 되는 가운데서도 實學을 표방한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아울러 鄭鑑錄 이나 彌勒信仰 등 民衆思想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여러 모습은, 중세봉건체제를 유지, 강화하려는 지배층 의 움직임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이같은 모순구조를 극복하고 타파하려는 민 의 저항, 즉 민중운동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민중운동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 사상의 여러 변동 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다.

조선 후기의 민중운동은 크게 두 갈래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향촌 사회에 근거하여 일어난 民亂, 즉 농민항쟁이며, 다른 하나는 정감록과 같은 민중사상을 기반으로 일어난 變亂이다. 이 때 민란 형태의 민중운동에서는 민중사상과의 관련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민란 형태 민중운동의 정형으로 일컫는 '1862년 농민항쟁'의 경우에도 민중사상과의 연관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변란 형태 민중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민중사상을 그 저항운동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민중운동의 사상적 기 반이나 특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민중운동=변란'이라는 등식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민중사상에 대한 이해 없 이는 민중운동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민중사상은 단순히 민중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사상이다. 민중사상은 곧 성리학의 지배이념에 반 대하여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체계이다. 그러므로 이 때의 민중사상은 민중운동을 논리적으로 받쳐주고 나아가 그 저항을 이끌어가는 적극적 의미 로서, 정체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민중의 변혁욕구를 수렴하여 그들의 저 항의지를 북돋아주는 동적인 개념이다.

조선 후기의 민중사상에 대한 이해는 조선사회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에 대 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성리학은 조선왕조가 공식으로 채택한 유일한 종교 요, 사상이다. 그러므로 성리학은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 전반의 지배질

서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배층은 공식적 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적 생활까지 성리학의 틀 속에서 수행하려 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일반 민중 의 생활까지도 성리학의 틀 속에서 아우르려고 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학자들의 연구와 자체의 여러 논쟁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正學'으로 자리잡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李滉과 李珥 등의 이른바 '四端七情' 논쟁은 성리학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으며, 이후 성리학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사회변동이 촉진되면서 18세기 이후에는 성리학도 뚜렷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8세기의 성리학은 16세기 이래의 사단칠정 논쟁을 계속하면서 이와 함께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이른바 '人物性同異論'을 놓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철학적 논쟁을 벌였다. 이는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이 주자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독자적 철학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쟁에는 중세적 인간상이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되고 있었을 뿐, 근대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1) 더욱이 이러한 유형의 논쟁은 성리학의 사변적 ·관념적 경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리학의 주체로서 정부 당로자를 포함한 지배층은 사회변동이 촉진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물적 토대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특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들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세적 지배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화라는 이름으로 성리학적 지배이념, 즉 성리학의 사회윤리를 민중에게까지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중세적 지배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성리학적 사회윤리의 내용은 성리학의 인성론과 명분론에 근거를 둔 三綱五倫, 곧 人倫으로 요약된다. 조선사회의 지배층은 삼강오륜의 인륜을 불변의 진리, 곧 하늘의 이치에따라 분수를 다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인륜은 실천도덕으로 생활화되고 관념화되어 오히려 법조항보다 앞서는 보편적 질서의 기틀이 된다고

¹⁾ 趙 珖, 〈朝鮮後期 思想界의 轉換期的 特性-正學・實學・邪學의 對立構圖-〉 (《韓國史 轉換期의 문제들》、지식산업사, 1993), 155~156쪽.

믿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윤리의 보급이야말로 민중을 가장 효율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방안 가운데서도 각종 성리학 윤리서의 간행, 보급은 그 대표적 예이다. 정부에서는 《朱子家禮》와 《小學》을 비롯하여 《孝經》·《五倫行實圖》·《東國新續三綱行實圖》등 인륜과 관련된 서적들을 간행하고 보급하였다. 더욱이 이 때는 이미 《小學諺解》·《家禮諺解》등 諺解本 윤리서가 보급되어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민중을 성리학 사회윤리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 효율적 방안으로 기능했다. 또한 정부에서 충신·효자·열녀 등을 기리는 旌閭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민인들에게까지 성리학적 통치질서의 수용을 강제한 것으로, 정부의 대민 통제책의 일환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성리학적 사회윤리의 보급과 같은 방법으로 지배체제의 강화를 시도하였으나 향촌사회는 결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사회변동의 가속성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총체적 수치는 증가되었다고 하나 그 혜택의 대부분은 지주들에게 돌아갔을 뿐이고, 부농으로 성장한 자영농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많은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숙종 37년(1711)에는 전라도에서 대량의 유민이 발생하였는데, 무안에서만도 5천호 가운데 2천호가 유민화할 정도였다. 2) 숙종 43년에는 충청도에서 10만 명이 유민이 발생하였고, 3) 경상도에서도 영조 9년(1733)에 약 17만 명의 유민이 발생하였다. 4) 이처럼 피폐한 향촌사회의 현실에서 성리학적 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지배층은 사회윤리의 보급을 표방하였지만, 그 이면의 목적은 민중에 대한 경제수탈을 효율적으로 해내려는데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지배체제 강화 시도는 향촌사회 안팎에서 민중의 저항을 불러왔다.

아울러 성리학은 공리공담과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심해져 점차 관념화, 사변화되어 갔을 뿐 아니라, 교조주의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로지 성

^{2) 《}備邊司謄錄》 611책, 숙종 37년 2월 20일.

^{3) 《}肅宗實錄》권 59, 숙종 43년 3월 계해.

^{4) 《}英祖實錄》 권 34, 영조 9년 10월 신묘.

리학만을 '正學'으로 내세우고 그 나머지는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과 종교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西學, 즉 天主教는 물론이고 기존의 佛教, 道教, 圖讖을 左道나 邪學·異端 등으로 배격하였을 뿐 아니라, 유교의 일파인陽明學까지도 이단으로 파악하며 성리학의 유일화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사상의 停滯를 가져왔다.

이에 성리학의 정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체계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변동의 가속화'라는 현실문제와 연결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미 교조화의 경향을 띠고 있던 성리학의 사상체계로는 이러한 여러 변화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실개혁에 필요 한 사상체계가 요구되었고, 이것이 곧 '實學'이다.

실학사상은 정치권력에서 배제된 근기지방의 남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 수용 범위가 넓어져 갔다. 그들은 기존의 성리학 연구를 답습하 는 것에서 벗어나 그것을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先秦儒學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경향이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는 의 지와 연결됨으로써 '실학=개혁사상'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었다.

실학은 성리학이 조선왕조 지배이념으로서의 한계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체제 속에서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실학자들의 현실문제의 해결 의지와 방법론은 이른바 '체제 속의 개혁'이었다. 이것은 실학사상이 유학적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탈성리학을 표방하였으나 성리학을 부정하지 못한 사상적 제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컨대실학자들은 성리학을 비판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 했을 뿐이고,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실학사상은 처음부터 '민중사상'으로 부를수 없는 한계를 그 자체로 갖고 있었다. 실학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했다고는하나 그것은 단편적이었다. 따라서 사회변동이 촉진되는 과정에서 보다 민중의 정서에 맞는 민중사상의 확산은 불가피하였다.

(2) 민중사상의 확산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 민중사상은 鄭鑑錄思想이다. 정감록은 風水圖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풍수도참 관련 예언은 왕조나 왕권의 교체기,

정치사회적 변동기에 자주 등장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풍수도참과 관련한 각종 서책들이 넘쳐났고, 이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았다. 이에 태종·세조·예종·성종 때에는 書雲觀에 소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풍수도참 관련 서책까지도 모두 焚書하도록 하였다.5)

정감록은 조선 초기부터 '鄭氏', '鷄龍山' 등 반조선왕조를 상징하는 구조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그러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전란을 겪으면서 사회모순이 심화되어 가던 시대상황 속에서 '뜻을 잃고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가 기존의 풍수도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정감록'을 만들어 내고 이를 유포하였다.6) 그리고 정조 때에는 '한글판 정감록'이 나돌 정도로 정감록은 민간에 널리 유포되고, 이는 곧 민중사상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감록은 선조 때부터 정조 때에 이르는 어느 시기에 혁명운동의 필요로 자료를 민간신앙 방면에서 취하여 未來國土의 희망적 표상으로 만들어 낸 듯 하다"가는 견해는 타당하다.

'정감록'이라는 이름은 영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감록이 특정한 서책이나 논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정감록을 전래의 비기 · 도참의 논리 중에서 현실과 결부시켜 예언한 사상의 총체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정감록 사상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 정감록은 현실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직관하고, 이의 타파를 염원하고 있다. 흔히 정감록의 正本으로 불리는 〈鑑訣〉에는 이러한 논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부자는 돈과 재물이 많기 때문에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같고, 가난한 사람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니 어디를 간들 빈천하게야 살지 못하라", "가난한 사람은 살고 부자는 죽을 것이다"는 등의 표현처럼, 경제적불평등 구조에 따라 '가진 자'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말세에 이르면 아전이 태수를 죽이고도 조금도 꺼리낌이 없고, 상하의분별이 없어지고 綱常의 변이 잇따라 일어난다", "사대부의 집안은 인삼으로

⁵⁾ 梁銀容、〈鄭鑑錄信仰의 再照明〉(《傳統思想의 現代的 意味》),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47等.

⁶⁾ 李能和,《朝鮮基督教及外交史》하, 3장 鄭鑑錄迷信之由來, 18~19쪽.

⁷⁾ 崔南善,《朝鮮常識問答》(三星文化文庫 16, 1972), 161 ...

망하고 벼슬아치의 집안은 탐욕으로 망할 것이다"는 등 신분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정감록 사상이 현실사회의 구조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민중의 정서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신분제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구조,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직접 겪고 있었고, 정감록 사상은 이러한 민중의 정서를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 정감록에는 사회경제적 모순이 가중되어 가는 현실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전할 길을 찾으려는 염원이 들어 있다. 이것은 당시 전란에 대한 민중의 공포감을 반영한 것으로, 〈감결〉에는 난리를 당했을 때 일신을 보전할 수있는 곳으로 '十勝地'라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는 "병화가 미치지 않으며 흉년이 들지 않아서 평범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형제들이 화기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여러 모순이 난리로 나타날 것에 대해 민인들이 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가중되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중의 열망을 담아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현실의 모순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정감록이 갖고 있는 논리의 한계이며, 당시 민중이 지닌 현실인식의 한계이다.

셋째, 정감록 사상에는 왕조교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성혁명사상의 논리가 구체화되어 있다. 즉, "鷄龍山 아래 도읍할 땅이 있어 鄭氏가 나라를 세우리라. 그러므로 福德이 李氏에게는 미치지 않으리라"⁸⁾고 하여, 이른바'李亡鄭興'에 의한 역성혁명사상을 담고 있다. 〈감결〉에는 이러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沁이 말하기를 白頭山에서 내려온 脈運이 金剛으로 옮아가고 太白·小白에이르게 되니 山川鍾氣가 鷄龍山으로 흘러들어 가서 鄭氏의 팔백년 도읍지가될 것이고, 그 후에 伽倻山으로 흘러들어 가니 趙氏의 천년 땅이 되고, 다음으로 全州 范氏의 육백년 땅이 된다. 松岳에 이르면 王氏가 도읍을 부흥할 것이다(安春根編、《鄭鑑錄集成》,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1, 〈鑑訣〉).

⁸⁾ 安春根編,《鄭鑑錄集成》(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1)〈三韓山林秘記〉.

여기에서는 역성혁명의 구체적 대상뿐만 아니라 각 왕조의 교체순서 및 왕조의 존속기간까지를 풍수지리설로 풀어서 설명했다. 정감록에 의하면 조선왕조의 존속기간이 보통 300~500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어 18세기는 조선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시기에 해당한다.⁹⁾ 이러한 '이망정흥'과 '鄭氏가 계룡산에 도읍한다'는 내용은 거의 모든 정감록류의 비기에 나타나 있을 만큼 정감록 사상의 기본 줄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혁명의 구체적 실현 방법은 계룡산 도읍의 주인이 정씨라는 사실에서도 나타났듯이, 鄭眞人이라는 메시아적 인물의 출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海島起兵說'은 정감록 사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저항 논리로 기능하였다. 해도기병설은 진인이 해도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와 현재 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즉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일 반적으로 진인은 도를 닦아 높은 경지에 이르러 용력이나 무술이 뛰어나며, 나라를 차지하거나 세상을 구하는 성스러운 과업을 담당할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해도기병설과 관련된 진인의 존재는 해도의 군사를 이 끌 군사지도자로서의 의미와 함께 민중의 현실적 고통을 구제할 수 있는 메 시아적 인물로서의 의미가 함께 있다.

이러한 해도기병설이 민인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현실성과 관련된 문제로, 당시 해도에 둔취해 있던 민인들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도망노비나유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해도로 몰려들어 저항세력화하고 있었다. 이때의 해도세력의 존재가 해도기병설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해도의 저항세력을 정감록에서 말하는 해도의 군사로, 그리고 저항세력의우두머리를 정감록의 진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둘째로 해도기병설은 이상사회 구현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이 때의 이상사회 문제는 체제모순으

⁹⁾ 우 윤,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역사비평》 2, 1988), 248쪽.

¹⁰⁾ 조동일, 〈진인출현설의 구비문학적 이해〉(《韓國 說話와 民衆意識》, 정음사, 1985), 87쪽. 한편 張泳敏은 용력이나 무술이 뛰어난 존재는 將軍이며, 진인에 게는 이러한 성격을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아울러 진인은 '天師'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하늘의 명에 따라 민중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였다(張泳敏, 《農學農民運動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5, 80~81쪽).

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중의 폭발적 에너지를 수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해도기병설에서 제시된 이상사회는 비현실·비합리·비과학적인 논리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의 약점은 적어도 온갖 현실의 고통과 좌 절을 일상적으로 겪는 민중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얼마나 민 중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는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해도기병설의 도달점, 즉 진인에 의해 구현된다고 믿고 있는 이상사회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은 이른바 '南朝鮮信仰'의 검토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崔南善은 남조선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앞에는 남조선이 있어서 때가 되면 진인이 나와서 우리를 그 곳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면 지금 시달리고 졸리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바라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좋은 세월을 맞이하게 된다"11)는 논리로 설명하였다. 즉 최남선은 남조선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상사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무렵 민인들은 남조선을 "남해의가운데 제주도 밖에 있는 지역으로 매우 넓고 토지가 기름져 살만한 곳"12)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남조선은 '민중의 염원이 깃들어 있는 미래의 조선', 즉 해도기병설에서 추구하는 도달점인 이상사회 그 자체로 민중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한편 彌勒信仰도 민중사상으로 기능했다. 미륵신앙은 석가모니 이후의 세계를 주관할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을 숭배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 미륵불은 未來佛이며 말법의 시대에 마땅히 나타날 當來佛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흔히 변혁의 논리로 이용되는 彌勒下生信仰은 말법의 시대에 미륵이지상으로 내려와서 龍華樹 아래에서 세 차례에 걸친 법회(龍華三會)를 열 때여기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륵신앙의 참 뜻은 단순히 도솔천에 왕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륵의 하생을 기다려 용화삼회의 설법장에 참여하여 모든 중생이 구제받는데 있는 것이다.13)

¹¹⁾ 崔南善, 앞의 책, 162~165쪽. 그는 여기에서 남조선을 "본래 조선민족의 현실고에 대한 정신적 반발력으로부터 만들어낸 하나의 이상사회 표상이며, 어의상으로 보면 朝鮮語에 南을 '앞'으로 새기니 남조선이란 전방에 있는 조선, 곧 미래 영원의 조선을 나타낸 것으로 언제까지나 희망으로 품는 조선"이라고 하였다.

^{12)《}雞鴨漫錄》坤, 奎 가람 古 813.08 G997m.

조선시대는 종교, 사상적으로 불교의 폐해를 극복하고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채택한 사회였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전기간을 통하여 '崇儒抑佛策'의기조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조선 초기에는 불교가 왕실과 사대부의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신봉되기는 하였지만 점차 쇠퇴하였으며, 중기 이후에는 국가·사회적 성격이 약화되고 민중의 종교로 명맥을 유지하여 갔다. 정부의 억불정책은 불교의 대중화 내지는 민중화를 촉진했던 것이다. 그리고이러한 과정에서 민중과 함께 했던 것이 미륵신앙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체제모순이 심화되고 사회변동이 촉진되면서 미륵신앙은 민중 사이에서 더욱 성행하였다. 이 때 미륵신앙에는 크게 고통받는 개개인을 구원해주는 기복신앙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새로운 이상사회가 도래한다는 변혁사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먼저 개인이나 집단이 사사로이 복을 기원하며 신앙행위를 하는 경우로, 이 때는 흔히 주술적 성격을 띠면서 민간신앙으로 전개되었다.14) 민간신앙으로 전개되는 미륵불의 신앙형태와 그 기능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득남을 기원하는 신앙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는 바위 등 자연물을 대상으로 득남을 기원하던 전래의 풍속이 미륵신앙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치병을 기원하였다. 샤머니즘적 사고에서 비롯된 치병에 대한 기원행위가 계속되면서, 한편으로는 미륵불을 대상으로 치병을 염원하였다. 셋째 수호의 기능으로 주로 마을 단위로 행해졌다. 이 또한 전래의 마을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넷째 기복신앙으로, 기존의 기복신앙에 불교적 색채가 더해져일월맞이 때 미륵에 치성드리는 행위, 장승이 미륵으로 불교화되는 현상 등이다. 이 밖에도 미륵신앙은 흔히 무속과 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테면 미륵을 '萬神'이나 '七星님'・'미륵님'으로 부르는 경우, 미륵이 山神閣이나 七星閣에 모셔지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국 미륵불에 대한 숭배를 통하여 개개인의 현실에 직 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소승적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 때 미륵신앙

¹³⁾ 洪潤植、〈韓國史上에 있어 彌勒信仰과 ユ 思想的 構造〉(《韓國思想史學》6, 1994), 81等.

¹⁴⁾ 金三龍, 《韓國彌勒信仰의 研究》(同和出版公社, 1983), 184~199\.

의 주체는 승려나 미륵경전을 공부하는 전문적 미륵신도들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미륵불에 치성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려는 일반 민인들이다. 이들은 불교, 즉 미륵신앙을 고등종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신앙과 다름없이 받아들였다.

다음은 미륵신앙이 갖는 변혁사상으로서의 기능이다. 미륵불은 말법의 시대에 출현할 未來佛이다. 그러므로 미륵불은 현세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에게이상사회의 구현에 대한 희망을 주는 '希望佛'로서의 성격을 갖는다.¹⁵⁾ 민중이 이상사회에 대한 희망을 미륵신앙을 통하여 구현하려는 것은 미륵신앙이사회변혁사상으로서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 미륵신앙의 변혁사상으로서의 성격은 주로 미륵하생신앙 속에 있다. 민중의 이상사회 구현에대한 희망은 미륵불이 하생하여 龍華三會를 통한 용화세계를 구현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런데 미륵하생신앙에 따르면, 미륵불은 석가모니 사후 56억 8천만년이지나서야 도솔천에서 인간세상으로 하생하여 용화삼회를 통해 중생을 구제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현한다고 한다. 물론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온갖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이상세계이다. 그러나 미륵불의 출현 시기를 56억 8천만년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의 질곡에서 당장 벗어나려는 민중에게는 공염불로 들릴 뿐이다. 그들은 미래불이며 당래불인 미륵불이 현실에 출현하기를 바랐으며, 사실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용화세계라는 절대평등사회이며 이상사회에 대한 염원을 구현하려 했다. 이러한 미륵하생은 현실세계를 인정하는 데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질곡의 세계인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미륵하생신앙은 그 자체로 메시아의 출현이라는 혁명적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에는 이와 같은 미륵신앙의 논리를 내세워 민심을 끌었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는 미륵신앙이 민중불교를 대표하며 민인들 사이에 확산될 때, '生佛信仰'도 민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생불신앙은 민중운동의 사상기반으

¹⁵⁾ 洪潤植, 앞의 글, 74~76쪽.

로 이용되었다. 이 때 생불신앙은 승려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흔히 무녀들에 의해 주재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흔히 무녀들이 '생불'을 일컬으며 妖言을 퍼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16) 그러므로 생불신앙은 민중불교와 무격신앙이 얽혀 있는 민중사상의 범주에 해당한다. '龍信仰'도 민간신앙 내지 민중사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민간신앙에서의 龍은 물을 지배하는 水神으로 신앙되면서 기우를 비는 대상신이었다. 또한 용은 미륵불의 출현 직전에 흉년과 재해가 넘치는 사회를 다스리며 미륵불의 강림을 예비한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용신앙은 무녀들 사이에서 널리 신봉되었고, 민중운동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민중사상으로 떠올랐다.

道敎도 민중사상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도교는 齋醮를 위주로 하는 科儀的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도교 행사에 대한 논란 끝에 중종 때 국가의 공식 기구인 昭格署가 혁파된 이래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크게 두 갈래로 나타났다. 첫째는 修鍊的 도교이 성격이 강화되었다. 수련적 도교는 엄격한 자기 수련을 통해 인간 생명력의 원기인 精·氣·神을 보전하는 방법 등으로 神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17) 조선 후기에는 도교수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유랑 지식인'들은 도술을 수련한다는 명목으로 산수를 떠돌기도 하였다. 이들은 서로 어울려 도맥을 형성하며 사승관계도 맺었다.18) 이 때에는 《海東傳道錄》・《靑鶴集》과 같이 도인들의 활동이나 사승관계를 밝힌 책들이 널리 위혀졌다. 둘째로 본래 민간신앙과의 습합 속에서 생겨난 도교가 이 때 들어 민간도교적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신앙과 도교에서 신앙하는 神의 존재가 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도교의 城隍・七星・竈王神 같은 경우는 도교 쪽에서보다 민간신앙 쪽에서 더욱 신앙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도교의 두 갈래 흐름 속에는 정감록 사상과 같이 민중운동 의 사상적 배경으로 삼을 만한 저항적, 변혁적 요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조

^{16)《}受教定例》妖邪惑衆二條.

¹⁷⁾ 金洛必,〈海東傳道錄에 나타난 道敎思想〉(《韓國宗敎》9, 1984), 106~109쪽.

¹⁸⁾ 車柱環, 《韓國의 道教思想》(同和出版公社, 1984), 143쪽.

선 후기에 민중사상을 기반으로 일어난 민중운동의 흐름 속에는 도교적 요소가 적지 않다. 이 때 민중운동의 주체들은 '神仙術'이나 '長生術'에 가탁하는 방법으로 민심을 끌었다. 이들은 仙人이나 神人들이 혼란한 세상을 구제하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점을 전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스스로 선인이나 신인의 행세를 하였다. 아울러 민중운동의 주체들은 도교의 한 부분으로 통하는 縮地術이나 遁甲術 등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呼風喚雨'나 '虛步法' 등을 구사하는 초인적 능력의 소유자로 통했다.

天主教는 기존의 민중사상과는 또 다른 성격의 민중사상으로 부각되었다. 천주교는 정조 8년(1784)에 공식 수용된 이래 그 세력을 빠르게 확장시켜 나 갔다. 이 때의 주역들은 李承薰·李蘗·丁若銓·權日身 등 이른바 '星湖左派'계열의 학자들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천주교를 異端邪說의 일종으로 파악했고, 정조 15년의 '珍山事件'으로 國禁을 공식화했다. 이는 전라도 진산에서 양반 尹持忠과 權尙然이 북경 주교의 지시에 따라 조상의 神主를 불사르고 제사를 폐지한 사건을 말한다.¹⁹⁾ 이 사건은 유교 제일의 사회윤리인 '孝'를 송두리째 뒤집었다. 정부에서 볼 때, 그들은 '無父無君'・'滅倫敗常'의 무리일 뿐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辛亥迫害'의 계기가 되었다.

천주교는 정부의 금지 속에서도 계속 교세를 확장해 갔고 점차 민중지향적 성격을 띠었다. 천주교가 민중 속에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평등사상'과 같은 민중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교리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천주교도들은 비록 노예와 천인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여 신분의 차이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빠져든다"는 인식을 가질 정도였다. 아울러 천주교 확산의 또 다른 계기는 이러한 사상을 민중에게 올바로 전달해줄 한글 번역본 천주교 서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서학'은 都下에서 시골에까지 퍼지고 아무리 '田氓'이나 '村夫'라고 할지라도 그책을 諺文으로 베껴 神明처럼 받드는 현상이 일어났다.20)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에서는 천주교도들을 '思亂'·'變世'의 마음을 가 진 자들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천주교도를 효율적

^{19) 《}正祖實錄》권 33, 정조 15년 11월 무인.

^{20) 《}正祖實錄》권 26, 정조 12년 8월 신묘.

으로 사찰하기 위해 기존의 향촌 조직망인 五家作統法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에 천주교도는 비밀결사화하고 있었으며, 천주교는 일종의 민중종교운동의 성격을 띠었다.²¹⁾

2) 민중운동의 사상적 특성

(1) 민중운동 속의 사상경향

조선 후기에 민중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일어난 민중운동은 妖言, 掛書‧凶書, 擧事謀議 등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민중운동을 '變亂'으로 불렀다. 이 때의 민중사상은 여러 秘記를 포함한 정감록 사상을 비롯하여, 미륵신앙과 생불신앙 등 민중불교, 신선술이나 장생술 등의 도교 사상, 용신앙과 같은 재래의 민간신앙이 이에 해당한다. 신흥종교로서의 천주교도 민중사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변란 유형의 민중운동은 언제, 누가, 어떠한 민중사상을 기반으로, 어떠한 형태의 저항을 하였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민중운동의 추이 속에서 민중사상이 적용되는 틀을 파악하려 한다.

18세기 초반, 戊申豫 이전까지의 민중운동에서는 정감록이 사상적 기반으로 활용되기는 했으나, 아직 그 틀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했다. 이 때 민중운동을 사상적으로 반쳐주는 중심은 미륵신앙이나 생불신앙 등의 민중불교였다. 이 민중불교에는 불교적 요소 못지 않게 무격신앙이나 용신앙 등 재래의 민간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먼저 미륵신앙을 내세운 민중저항운동으로는 숙종 14년(1688) 8월에 呂還을 비롯한 미륵신도들이 경기도 양주를 중심으로 거사를 모의한 사건이 대표적이다.²²⁾ 사건의 주동 인물들은 여환을 비롯하여 地師 黃繪, 巫女 元香(龍女夫人)과 戒化(鄭聖人), 아전 鄭元泰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석가가 멸하고

²¹⁾ 趙 珖,《朝鮮後期 天主教史 研究》(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8), 137~142·172~177\

²²⁾ 鄭奭鍾,〈肅宗朝의 社會動向과 彌勒信仰〉(《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一潮閣, 1983).

미륵이 마땅히 세상을 주장한다"는 논리로 인물을 모으며 서울공격을 결정하였다. 이 때 이들이 내세운 최대의 무기는 우수한 물리력이 아니라, 미륵 신앙의 논리였다. 여환과 계화 등은 "큰 비가 내릴 것이고 그러면 산악이 무너지고 國都 역시 탕진할 것이다"라는 미륵하생의 조짐을 예고하면서 궁궐 공격의 타당성과 자신감를 내보였다. 그러나 거사를 예정한 날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거사를 연기하였다가 사건이 발각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에는 여환 등이 주장하는 미륵신앙의 논리에 원향과 계화 등이 내세우는 재래의 용신앙이 결합되어 있다. 이 때의 용신앙은 미륵불이 하생하기 전에 龍이 아들을 낳아 나라를 주관하지만, 비바람이 고르지 못하고 오곡이 맺지 않아 사람들이 굶어죽게 되면 결국 미륵불이 출현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여환 등 미륵신도가 용신앙의 대변자인 원향과 계화 등을 포섭하는데 성공했음을 뜻한다. 이 밖에도 이 거사모의에는 칠성신앙이나 도교적 요소까지 복합되어 있으며, 황회의 측근인 鄭好明은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추앙되던 崔瑩장군의 靈을 자칭하기도 하였다.²³⁾ 그리고 주동 인물들은 미륵신앙과 용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사상을 단순히 동조자를 끌어들이려는 수단이 아니라, 사건을 이끌어가는 추진 동력이며 사건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인식하였다.

이 사건은 미륵신앙과 용신앙을 사상적 기반으로 거사모의까지 이어졌다. 그렇지만, 18세기 이전 대분분의 민중저항운동은 요언 단계의 수준을 넘지못했다. 대표적으로 '首陽山 生佛出現說'을 들 수 있다. 숙종 17년(1691)에 무격인 車忠傑・曺以達・愛珍 등은 황해도 일대에서 생불이 출현할 것이라는 따위의 주장으로 민심을 동요시켰다.²⁴⁾

이들은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漢陽이 장차 망하고 奠邑이 일어날 것이다"는 정감록의 논리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른바 '天機'를 공부하였다. 이때의 결론은 首陽山 정상의 義相庵에 鄭弼錫이라는 생불이 살고 있는데, 그가 자신들의 천기 속에 항상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필석이 곧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때를 대비하여 산 속에서 생불에게 제사를 지냈으

²³⁾ 鄭奭鍾, 위의 글, 50 · 65쪽.

^{24)《}推案及鞫案》104책, 신미 車忠傑推案.

며, 이 제사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부처가 주관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 '수양산 생불출현설'은 승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격에 의해 일어났다. 더욱이 애진은 무속에서 사용하는 '靈山十王'・'世尊靈氣' 등을 칭하였고 산속 제사를 주도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민중불교로 파악할 수 있는 '생불'을 정점에 올려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교적 색채보다 오히려 무속적 성향이 더욱 강하다. 아울러 이들의 주장에 정감록의 '李亡鄭興'의 논리가 들어있는 것도 주목되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민중불교 논리의 일종인 생불을 내세운 妖言 단계의 전형적 민중저항운동이다.

이 밖에도 숙종 때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요언 단계의 저항이 일어났다.25) 숙종 2년(1676) 11월에 神僧을 자처하는 處瓊이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를 떠돌면서 민인들을 끌어모았고, 이에 민인들이 그를 '생불'로 받들었다. 숙종 14년 11월에는 李龍錫이 신령스러운 무당임을 자처하면서 민중을 미혹시키자 민인들이 재물을 갖고 몰려들었다. 숙종 38년 8월에 양주의 李標은, 같은 마을의白尚福과 白尚祿 형제가 "赤帝와 白帝를 자처하며 자신의 집을 대궐이라 하고 자신의 옷을 곤룡포라 일컬으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는 따위의말을 했다고 무함하였다. 숙종 39년 12월에는 충주의 李東奭이 大院寺의 승려 道洞 등과 함께 벽돌에 讖記를 새겨넣어 축성하고 僧軍을 기르려고 하였다. 숙종 44년 8월에는 무격을 생업으로 삼는 金城의 常漢 申義先과 淮陽의백성 尹風立이 각각 聖人과 公子를 자처하며 각종 요언을 퍼뜨렸다.

이처럼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 즉 戊申亂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민중 저항운동은 요언 단계에 머물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승려나 무격들이 저항을 주도하였다. 이 때 이용된 민중사상도 객관적으로 잘 다듬어진 논리 라기 보다는 조악한 수준의 단편적 논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들 요언 단계의 저항은 체제부정적인 논리와 함께 민중에게 미치는 파 급효과가 매우 컸다. 흔히 한 지역에서 요언이 발생하면 인근 지역으로 급속 히 퍼지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민심 흐름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²⁵⁾ 高成勳, 《朝鮮後期 變亂研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3), 69~70쪽.

18세기에 접어들어 민중운동은 그 형태와 민중사상을 이용하는 틀이 변화한다. 이렇게 된 직접적 계기는 영조 4년(1728)의 무신란이다. 물론 무신란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요언 단계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더욱이 미륵신앙이나생불신앙과 같은 민중불교를 내세운 요언도 몇 차례 발생하였다. 영조 34년에는 황해도 일대에서 무녀 英梅·福蘭臺·英時 등이 미륵불과 생불을 자칭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무녀들을 생불로 떠받든 일이 있다.26) 아울러 영조 말년의 '잡술'을 이용하여 체제를 비방한 요언 사건도 주목을 끈다. 그러나 그 추세는 요언 단계의 저항에서 쾌서나 흉서 단계의 저항으로 옮아가고 있었다. 즉 영조 때의 민중운동의 형태는 대부분 쾌서나 흉서 단계의 저항이었다. 이를테면 명백히 드러난 쾌서사건의 경우만 해도, 숙종 때 발생건수가 4건에 불과한 반면에 영조 때에는 무려 15건에 이른다.27)

영조 9년에는 남원에서《南師古秘記》와 관련한 '八空庵' 흉서 사건이 일어 났다.28) 평민 金元八, 양반 崔鳳禧, 승려 太眞 등이 주도하였다. 김원팔은 '筆墨契'를 주도할 정도의 자금력을 지니고 있었다. 최봉희는 '유랑 지식인'으로, 김원팔의 食客이었다. 그는 태진이 소지하고 있던 《남사고비기》를 베껴 이를 김원팔에게 넘겨주었고 김원팔이 다시 이를 베껴 보관하였다. 이들이 《남사고비기》를 이용하여 어떠한 구체적 일을 도모한 흔적은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은 일종의 흉서소지의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의 흉서가무신란 때 괘서했던 내용과 《남사고비기》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이 때 南師古는 민중에게는 이인으로 존경받았지만, 지배층에서는 인심을 妖惑시킨 자로 폄하되었던 인물이다.29)

이 때 흉서의 내용 가운데 무신란의 일에 대해서는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길이 막히며 민가에 연기가 끊긴다"는 따위로 기록하였다. 아울러 "백성이 보존될 수 있는 곳은 山林"이라는 식의 피장처의 논리도 들어 있다. 이들은 《남사고비기》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으나 거사를 준비하는 단계로까

^{26)《}受教定例》妖邪惑衆二條.

²⁷⁾ 李相培, 〈朝鮮後期 漢城府 掛書에 관한 硏究〉(《鄉土서울》 53, 1993), 155~156쪽.

²⁸⁾ 高成勳, 앞의 책, 96~112쪽.

^{29) 《}英祖實錄》 권 35, 영조 9년 8월 갑술.

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필묵계' 모임 등을 통해 어울리며 현실을 비판하는 등 체제저항을 기도했다.

영조 24년(1745) 4월에는 청주와 문의에서《道詵秘記》의 내용을 기반으로 '文義'괘서가 일어났다.30)'戊申餘黨'인 李之曙와 朴椒樞, 土族 吳命垕 등은 청주와 문의에서 요언을 유포하여 민심을 동요시켰고, 이에 자극받아 청주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문의에서 괘서사건을 일으켰다. 이들이 유포한 요언은 "倭人 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올라온다. 물이 이롭지 않고 산도 이롭지 않으며 '弓弓'이 이롭다"는 따위의《도선비기》의 내용이다. 이 때 왜인 같지만 왜인이 아닌 집단의 정체는 해도에 있는 '무신여당'이라는 것이다. 또 "울릉도 건너편에 黃鎭紀 등 무신란의 여당이 있으며, 황진기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하여, 무신란 때 주요 수배 대상이었던 황진기가 죽지 않고 해도를 근거로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黃鎭紀不死說'을 내세웠다. 이 사건은 무신여당 가운데 황진기 세력을 해도기병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사건에서³¹⁾ 알 수 있듯이 영조 때의 변란 유형의 민중운동은 무신란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하여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흔히 '무신년의 일과 같다'라고 하며, 그 주체들은 '무신여당'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 때 이용된 민중사상의 특징으로는 정감록 사상이 《남사고비기》나 《도선비기》등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도선비기》의 '似倭非倭'說은 이후에도 여러 저항과정에서 반복하여 나온다.

또한 이 무렵에는 왜구나 오랑캐가 침공할 것이라는 따위의 와언이 퍼져위기감이 조성되었다. 이를테면 '문의'괘서 직전에는 청주에서 "왜구가 곧 쳐들어 올 것"이라는 와언이 퍼져 충청도와 경기도의 민인들까지 산 속으로피난을 떠나는 사태가 일어났다. 정조 11년(1787)에는 경기와 호서지방에서 "북방족의 기병이 들이닥칠 것이다"32)는 와언이 퍼져 백성들이 집을 비우고

³⁰⁾ 高成勳, 앞의 책, 112~125쪽.

³¹⁾ 李能化는 이 두 사건을 정감록과 관련하여 일어난 대표적 사례로 꼽은 바 있다 (李能化,《朝鮮基督敎及外交史》하, 3장 鄭鑑錄迷信之由來, 25~26쪽).

^{32) 《}正祖實錄》권 23, 정조 11년 4월 병진.

달아나는 소동이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외세침공설'은 정감록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 때 와언의 유포자들은 전란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는 사회분위기를 이용하여 향촌사회를 동요시키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 때 '山林'이나 '弓弓'과 같은 피장처의 논리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도주목되는 사실이다.

18세기 말기, 특히 정조 때의 민중운동은 무신란과의 연계성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영조 때와는 다른 민중운동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영조 때 민중운동의 일반적 형태로 15차례나 발생했던 괘서는 단 한 차례밖에보이지 않는다.³³⁾ 이 때는 괘서나 흉서보다는 오히려 거사모의 형태의 저항이 주로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형태의 변화는 그 운동을 뒷바침하는 사상적기반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 때에도 강릉에서 미륵불을 자칭하는 요언 사건이 일어나는 등 민중불교는 관심의 대상이었다.34) 그리고 영조 때 각종 민중운동의 저항논리로 이용되었던《道詵秘記》의 '사왜비왜'설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다.35) 이러한 사례들은 단편적 현상이었다. 영조 15년에 평안도 지역에서 '鄭鑑錄'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이래,36) 정조 6년(1782) 文仁邦과 李京來등의 '서울공격' 거사모의 때 '정감록'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상이 본격 전파되었다.37) 이들은 정감록의 논리를 유포하며 전국에 걸쳐 동조인물을 모으고, 都元帥一先鋒將一運糧官 등의 조직체계를 갖춘 후 襄陽에서 거사하여 杆城→江陵→原州→東大門으로 입성한다는 계획으로 거사를 준비하였다. 요컨대 이들의 목표는 물리력에 의한 정권의 쟁취였다.

이들은 거사의 준비과정에서 정감록을 주요 사상기반으로 삼았다. 문인방은 白天湜 등과 함께 충청도 진천에서 '잡술'을 유포하며 민심을 모으다 포도청에 체포되었다.³⁸⁾ 문인방 등은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乘門衍義》·

³³⁾ 李相培, 앞의 글, 156쪽.

^{34)《}受教定例》妖邪惑衆二條.

^{35) 《}正祖實錄》권 19, 정조 9년 3월 계유~기묘 · 4월 경진.

^{36) 《}備邊司謄錄》 105책, 영조 15년 6월 15일.

³⁷⁾ 高成勳, 앞의 책, 139~155쪽.

^{38) 《}正祖實錄》 권 14, 정조 6년 4월 경오.

《經驗錄》·《神韜經》·《金龜書》등을 학습하면서 동조 인물들을 모았다. 이 책들의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책들이 '정감록'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공초과정에서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정감록의 '六字凶言'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체제를 비판, 부정하는 내용임에 틀림없다.

이 사건으로 민중운동에 있어서의 정감록 사상은 질적으로 변화하였다. 그것은 이 때 '한글판 정감록'의 출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39) '한글판 정감록'의 출현은 지금까지 정감록이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지식인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대상이 민중으로까지 확산되어 갔음을 뜻한다. 정감록이 민중사상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일반에 확산된 것은 정감록이 체제부정, 혁명성, 이상향 등의 파격적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글판 정감록'의 출현은 곧 정감록의 대중화를 보다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처럼 정조 때는 정감록 사상이 확산되고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여러 민중운동에는 정감록의 논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해도기병설'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해도기병설은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그것은 정감록의 문구 자체를 단편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었다. 이 때에 들어서 여러 사건에서 구체적 섬 이름이 등장하는 등 해도기병설은 보다 틀을 갖추어 갔다. 앞의 '서울공격' 거사모의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의 해도는 곧 '小雲陵'으로, 여기에 해도기병설의 실체가 응축되어 있다. 문인방은 정감록을 유포하는 한편 해도기병설을 제기하였다. 그는 단순히 정감록에 들어 있는 해도기병설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차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리로 발전시켰다. 소운릉의 기능은 물산이 풍부하여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섬, 즉 자체적으로 경제생활을 꾸릴 수 있을만큼 자연조건이 탁월한 곳이며, 그 자체로 민중의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을수렴한 곳이다. 아울러 소운릉은 戰場으로 간주되는 등 군사적 의미도 지녔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도기병설의 도달점인 이상사회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다. 그리고 소운릉은 당시 해도가 저항세력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39)《}推案及鞫案》235책, 임인 逆賊仁邦京來等推案 朴瑞集供, 169쪽.

이 밖에도 정조 9년(1785)의 '山人勢力' 거사모의⁴⁰⁾ 때 文洋海는 해도기병설의 일종인 '東國三分說'을 전파하였다. 그는 '동국삼분설'을 설명하면서, "조선의 산천과 천문지리는 모두 삼분의 조짐이 있다. 임자년에 도적이 나타나고 그 후에 삼분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삼분의 姓은 鄭・劉・金哥인데 필경 鄭哥가 하나로 통일시킬 것이며 남해의 섬 가운데에 있다"라고하여, 삼분 후 통일을 말하면서 통일의 주체는 해도에 있는 鄭眞人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정감록의 '해도에서 정진인이 기병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사례이다.

정조 11년 6월에는 충청도 제천의 金東翼・金東哲 형제와 강원도 횡성의鄭武重 등이 '無石國'관련 요언을 유포하면서 거사를 모의하였다.41) 이들은 수시로 "왜적 같지만 왜적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올라온다"라고 하여,《道詵秘記》의 '似倭非倭'의 논리를 유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도의 이름을 적시하고 그곳에서 군사를 양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요지는 김동철의 아들 曾悅이 일본과 동래의 중간에 있는 '무석국'이라는 섬을 정벌하였고, 현재 그 섬 근처에 있는 '麻島' 또는 '薪島'라는 섬에서 군사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鄭希亮의 손자 醎을 추대하여 6월 11일에 거사할 예정인데 거사를 단행하면 전국에서 호응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사 성공을 예상하여 미리 관직의 배분까지 해놓았다.

이 때는 정감록과 도교의 신선사상이 함께 저항과 변혁의 논리로 이용된 사례도 있다. 마치 숙종 때 미륵신앙과 용신앙이 습합되어 있던 사례와 비 슷하다. '서울공격' 거사모의 때 朴瑞集의 공초에 의하면, "문인방은 仙道를 배웠으며 長生術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진술했다.42) 그러나 정감록과 도교 의 신선사상이 본격적으로 결합한 것은 앞의 '산인세력' 거사모의 때였다. 이 때 정감록은 그 저항을 이끌어가는 주요 논리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 심 인물인 떠돌이 지사 문양해는 정감록뿐만 아니라 도교에 대해서도 해박 한 지식을 지녔던 인물이었다. 문양해는 도교의 정통 의식인 齋醮를 거행할

⁴⁰⁾ 高成勳, 앞의 책, 155~172쪽.

^{41) 《}正祖實錄》권 23, 정조 11년 6월 경술.

^{42) 《}推案及鞫案》 234책, 임인 逆賊仁邦京來等推案 朴瑞集供, 195~197쪽.

정도였다. 그는 사건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주체로 '산인세력', 즉 仙人(異人・ 神人)을 내세웠고 이들의 근거지를 '智異山 仙苑'이라고 했다.

'산인세력'은 각각 고유의 이름과 함께 香嶽先生(成居士), 白圓神, 一陽子(茅 仙) 등 도교적 색채가 물씬 풍기는 별호들을 사용했다. 또 우리 나라 도교의 시조로 평가받는 崔致遠이 등장하여 鹿精・熊精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또 坤帝니 水君이니 하는 神仙의 우두머리들도 등장한다. 문양해는 이들의 나이 가 수백 살이라고도 했다. 그는 선인들의 譜帖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그의 공초에 의하면, 이들 선인들은 '동국삼분설'・'해도기병설'・'北賊出現說' • '靈巖起兵說' 등을 주장하여 '三道起兵說'의 계획을 뒷받침하고 하동에 근 거지를 마련하도록 했다. 도교와 정감록 사상이 서로 결합한 논리이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문양해의 조작에 의한 허구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鍾秀의 "그것의 정황을 볼 때는 苗脈 이 있다"43)라는 주장은 음미해볼 만하다. 지리산 기슭에 위치한 하동을 중심 으로 지리산 일대에 변혁 지향적인 일단의 집단이 도교를 수련하고 정감록 을 익히며 조직적으로 체제저항을 기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 다. 이를테면 하동이 거사들의 집단 거주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음은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44)

한편 이 무렵에는 천주교와 정감록 사상이 함께 저항의 논리로 이용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천주교도 가운데 일부가 정감록 사상에 기울어져 있 었던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정조 21년(1797)에 서울과 지방을 떠돌던 '저항 지식인'姜ై天과 여주의 문벌로서 유력 천주교도인 金建淳 등은 수시로 회 합하면서, "바다 가운데 品字 모양을 닮은 섬이 있는데 병마가 强壯하다"거 나, "바다 가운데 진인이 있는데 六任과 둔갑술을 알고 있다"는 따위의 해도 기병설 관련 요언을 퍼뜨리면서 민심을 동요시켰다.45) 또한 천주교도 柳觀儉 은 "聖世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밤에 배 일천 척을 댄다"는 비기의 내용을

^{43) 《}承政院日記》 1579책, 정조 9년 3월 23일.

^{44) 《}正祖實錄》권 21, 정조 10년 2월 을미.

^{45)《}正祖實錄》권 47, 정조 21년 11월 병자・정축・무인・신사・을유. 《純祖實錄》권 2, 순조 원년 4월 병인.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를 이용하여 "예수가 庚申年에 태어났으니 경신은 곧 성세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경신년은 곧 1800년이다. 이로 볼 때 천주교와 정감록 사상이 서로 연결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6) 이처럼 천주교가 다른 종교나 사상과 함께 등장하자 정부에서는 천주교를 불교, 도교, 참위설 등과 비슷한 것으로 잘못 알기도 했다.

18세기의 민중운동이 무신란의 영향 아래서 확산되었다면 19세기의 민중운동은 洪景來亂으로 폭발하였다. 잘 알려졌듯이 홍경래 난의 사상적 기반은 정감록의 해도기병설이다. 홍경래 난의 창의문에는 紅衣島에서 태어난 鄭聖人이 鐵騎 10만을 거느리고 東國을 숙청할 뜻을 가졌다는 내용이 있다. 이내용은 해도(홍의도)에서 정진인(성인)이 군사(철기 10만)를 이끌고 나와 조선(동국)을 정별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해도기병설의 내용과 같다. 이처럼 홍경래 난 때 해도기병설이 출현한 이래 이와 비슷한 논리를 내세운 민중저항운동이 이어졌다.

이로 볼 때 19세기 전반기의 민중운동과 그 운동을 뒷받침하는 사상체계는 정감록의 해도기병설이 강력한 논리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조때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민중운동의 형태도 앞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18세기 이전의 요언, 영조 때의 괘서, 정조 때의 거사모의가 민중운동의 주류였다면, 순조 때는 요언, 괘서, 거사모가 비교적 고르게 일어났다. 그러나 이 때의 요언이나 괘서도 거사모의를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운동의 주류는 양이나 질적으로 보아도 역시 거사모의였다.

이 때 요언 단계의 저항에 그친 경우를 보면, 순조 30년(1830) 3월 영남 사람 郭必周가 잡술을 핑계대고 요사한 말을 만들어 서울과 지방을 오르내리며 인심을 선동하다가 포도청에 체포된 사실이 있다.47) 순조 32년에는 영변의 申士化・李以德・李斗千 등이 "진인을 따라야 한다"는 정감록의 말을 유포하며 인심을 선동하였다.48)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해도기병설과 연관되어 있으며 요언 단계에 머물지 않고 거사모의로 발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⁴⁶⁾ 趙 珖, 앞의 책, 161~162쪽.

^{47)《}純祖實錄》권 31, 순조 30년 3월 경술.

^{48) 《}純祖實錄》 권 32, 순조 32년 10월 임자.

한편 이 무렵에도 鷄龍山 관련설은 민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순조 21년(1821) 朴灝源·沈亨鎮 등은 '鷄龍山卜居說'을 퍼뜨렸다.49) 이들은 정감록의 계룡산 관련 내용, 즉 '鷄龍山 五百年 新都說'에 따라 계룡산에 들어갔다. 이들은 계룡산을 답사하고 나서 "산천이 수려하고 살기에 합당한 곳이어서 그 곳을 얻으면 자손들이 榮貴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壯士 137명과 함께 계룡산에 들어가 살 계획을 세웠다. 이 사건은 정감록에서 新都로 알려져온 계룡산을 소재로 한 요언 사건으로, 이 때의 계룡산은 '남조선신앙'에서 말하는 이상사회라 해도 좋을 것이다.

19세기 전반기 민중운동의 중요한 사상적 특성은 해도기병설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홍경래 난의 영향으로 '洪景來不死說'이 크게 유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순조 17년 3월에 蔡壽永·安有謙 등은 명화적과 결탁하여 거사를 준비하면서, "홍경래와 李禧著가 생존하여 馬島로 잠입하였다"는 등의 '홍경래불사설'을 퍼뜨렸다.50) 순조 26년의 金致奎·李昌坤 등의 괘서에도 "홍경래·이희저가 서쪽에서 제주도로 들어갔다"라고 하거나, "홍경래와 禹君則이 제주에서 취회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51)

순조 26년에 鄭尚采와 朴亨瑞 등의 주도로 해도기병설과 관련한 거사모의가 일어났다.52) 정상채는 군사를 기르는 해도는 '紅霞島'이며, 군사를 이끌진인은 鄭在龍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도읍, 즉 '福州(安東)'를 新都로설정한 가운데 거사를 준비하였다. 이 때 '복주'는 전래의 신도로 알려져온계룡산을 극복하고 새롭게 '남조선신앙'이 구체화된 곳으로, 곧 해도기병설의도달점인 이상사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때 출륙의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을 정벌하기 전에 對馬島를 먼저 攻取한다는 '對馬島征伐說'이다. 이것은 현실의 군사적 의미로는 대마도를 아우르고 그 병력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도기병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南賊出現說'을 뒷받

^{49) 《}左捕盜廳謄錄》 4책, 신사 7월 14일, 71~78쪽.

^{50) 《}純祖實錄》 권 20, 순조 17년 3월 기미.

^{51)《}推案及鞫案》282科, 병술 罪人致奎昌坤柳聖浩李元基鞫案.

^{52)《}推案及鞫案》281型, 병술 罪人亨瑞尚采申季亮鞫案.

침하는 논리로 작용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채와 박형서가 주창한 "西賊이 나온 이후에 南賊이 마땅히 나오고, 진인이 해도에서 나온다"53)라는 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서적은 봉기에 실패한 홍경 대군을 뜻하며, 그들은 陳勝・吳廣의 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홍경 대 난 이후 '남적출현설'이 '서적출현설'을 대체하면서 유력하게 전파되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전반기의 민중운동은 정조 때 이래의 해도기병설을 주요 논리로 삼고 있는 가운데 여러 저항과정에서 '홍경래불사설'이 크게 유행하 였다. 이것은 홍경래 난의 영향 아래서 민중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으로 '남적출현설'은 '서적출현설'을 대체하는 것으로 홍경래 난의 실패를 반성하고 새롭게 일어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2) 민중사상 전파의 주체

앞에서 민중운동 과정에서 포착된 민중사상의 흐름을 바탕으로 민중운동의 주체, 말하자면 민중사상을 체계화하고 유포한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민중운동을 통해 추구한 정치·사회적 목표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려 한다. 조선 후기의 대부분의 변란, 즉 요언이나 괘서, 또는 거사모의 단계의 저항에서 '민간사상의 유포자=변란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변란 형태의 민중운동 주체는 곧 민중사상을 전화하는 사람들이다. 이 때 민중운동의 주체, 즉민간사상을 유포한 주체는 어떠한 사람들일까. 그것은 물론 구체적 사상에따라 다르다.

먼저 18세기 초반까지 유력한 민중신앙으로 기능했던 민중불교, 즉 미륵신앙이나 생불신앙 등을 주재한 집단으로 승려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승려들이 독점적으로 미륵신앙이나 생불신앙을 주재하지 못한데 있다. 이를테면 숙종 14년(1688) 거사모의 때 승려 여환 등 미륵신도들이 거사준비를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향이나 계화 등 무녀들도 용신앙뿐만 아니라미륵신앙에 대한 일까지 예언하면서 적극 참여하였다. 이를테면 '龍女夫人'으

^{53)《}推案及鞫案》281 4, 增全 罪人亨瑞尚采申季亮鞫案 鄭尚采供, 787 4.

로 불리는 무녀 원향이 황해도 문화에서 경기도 양주까지 올 때 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랐다는 사실, 무녀 계화가 서울공격을 계획할 때 그 논리적 분수령이 되었던 이른바 '雨注傾蕩'을 주장했던 사실로 보아도 무녀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불신앙은 무녀들에 의해 장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종 17년(1691)의 '수양산 생불출현설'을 주동한 차충걸·조이달·애진은 모두 무격이며, 더욱이 애진은 실질적으로 생불과 관련된 일들을 주재했다. 영조 때의 생불 관련 요언도 모두 무녀들에 의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생불신앙은 정통 불교의 범주라기보다는 무격들에 의해 주재되었던 민간신앙에 해당한다.

이들은 미륵신앙이나 생불과 관련된 요언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그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저항은 더 이상의 단계, 이를테면 거사모의로 옮아갈 수는 없었다. 그것은 이들이 무격신앙을 자신들의 사상적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륵신앙이나 생불신앙을 단편적으로 이용할 뿐 완전히 소화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몰려드는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이후의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체제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말을 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거의 개인적 차원의 일로서, 기복을 추구하거나 재물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영조 4년(1728)의 무신란 이후에는 정감록 사상이 확산되면서 그 주체도 변했다. 영조 때 정감록을 유포한 주체는 정치집단에서 탈락하여 떠돌이 생 활을 하는 지식인들과 이른바 '戊申餘黨'으로 불린 자들이 주축을 이룬 가운 데 승려들도 적지 않았다.

앞의 '팔공암' 흉서 때《南師古秘記》를 입수하고 보관한 인물은 승려 태진이었으며, 이를 베껴 김원팔에게 전한 사람은 각지를 떠돌던 몰락양반인 地師 최봉희이다. 영조 19년에 거짓으로 "姜世發이 거사를 모의했다"고 고변한 金殷昌의 경우는 각지를 떠돌다가 승려가 되었고 이후 다시 환속하여 堪興術을 익혔던 자이다.54) '文義' 괘서를 이끈 이지서와 박민추는 '무신여당'이다. 영조 36년에 "해도에 수만 명이 모여있다"는 와언을 유포한 淸潤은 승려이

^{54) 《}英祖實錄》 권 58, 영조 19년 5월 갑오.

다.55) 영조 38년(1762)에 궐문에 괘서하려다 체포된 裵胤玄은 '잡술을 하는 허탄한 사람'56)으로 곧 지사이다. 영조 40년 영남에서 잡술로 민심을 혼란시켰던 李達孫은 '무신여당'이며, 者斤萬은 지사로 보인다. 이 때는 道行・文淡・達文 등 승려들도 참여하였다.57) 영조 44년에 호남에서 잡술로 민심을 교란했던 申弼周는 '奇門堪輿術'을 익히고 있던 떠돌이 지사이다.58)

이 때 '유랑 지식인'이 정감록 전파에 쉽게 참여한 것은 경제적 기반의 악화로 말미암아 떠돌이 생활을 하는 지식인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팔공암' 흉서 때의 양반 최봉희가 떠돌이 생활 끝에 평민 김원팔의 식객이 된 사실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무신란에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랑 지식인' 집단에 동조 또는 합류함으로써 그들의 단순 수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체제비판의 강도도 높아졌다.

이 때의 승려들은 정부의 억불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도 체제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신분이 천민으로 떨어진 대신에國役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이에 피역하려는 일반 민중이 승려로 투탁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들은 대부분 생활의 방편으로 승려를 택했기 때문에 수도생활보다는 현실의 일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하여 이들 가운데 학문적 소양이 있는 자들은 정감록과 같은 민중사상을 전파하며 체제를 비판하고 민중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일부는 明火賊이 되기도 하였다.

정조 때 이후에도 민중사상 전파의 주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때도 '유랑 지식인'들이 민중사상의 전파를 주도했다. 이들의 생업은 대부분 地師였다. 조선시대에는 풍수가 성행하였다. 그리하여 "指南針을 차고 있는 사람은 천리 길을 나서도 양식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59)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유랑 지식인'들은 지사의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 아울러 이들은 훈장노릇을 병행하거나 의술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여러 곳을 떠돌면서 동조 인물을 모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거

^{55) 《}英祖實錄》권 95, 영조 36년 2월 갑진 및 3월 병진・정사・병인.

^{56) 《}英祖實錄》 권 99, 영조 38년 2월 계사.

^{57) 《}英祖實錄》 권 103, 영조 40년 4월 무술.

^{58) 《}英祖實錄》 권 110, 영조 44년 5월 경신·신사.

⁵⁹⁾ 朴齊家,《北學議》外編, 葬論.

나 이름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들의 일은 점차 전문화되고 직업화되어 갔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유랑 지식인'이 아니라 '저항 지식인'60)으로 자리잡아 갔다.

이러한 인물로는 정조 6년(1782) 11월의 '서울공격' 거사모의의 주역인 文仁邦이 대표적이다. 그는 천민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洪國榮의 측근으로 이조판서를 지낸 宋德相에게 학문을 배웠고, 그에게 직접 '玉圃先生'이라는 書號까지 받았다. 이로 보아 문인방이 어느 정도 학문적 소양을 쌓았음은 쉽게알 수 있다. 문인방은 거사모의가 발각되기 10년 전인 영조 48년(1772)에 李京來와의 만남을 계기로 거사를 생각했다. 두 사람은 이후 여러 차례 회합하면서 정조 원년부터는 거사준비를 본격화하였다. 이들은 동조 인물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다. 문인방은 함경도에서 훈장과 의원을 가칭하는 방법으로 동조 인물을 모았다. 아울러 각지를 떠돌면서 정감록을 입수하고 이를 전파하였다. 정조 6년 봄에는 진천의 산속에서 '잡술'을 전파하였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해도에 유배중일 때에도 차瑞集을 끌어들이는 등 끊임없이 거사를 준비하였다. 아울러 정감록의 강력한 논리인 해도기병설을 '小雲陵'이라는 섬에가탁하는 등 보다 정제된 형태로 정감록 사상을 전파하였다.

이와 같이 민중사상 전파의 주체들은 문인방과 비슷한 경로를 밟은 '유랑지식인'이자 '저항 지식인'들이다. 이를테면 앞의 '산인세력' 거사모의 때의 文洋海·朱炯采·李奎運(吳道夏)·朱炯魯, '無石國' 거사모의 때의 金東翼·金東喆 형제, 擧事說을 퍼뜨린 陳東喆 등도 모두 문인방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규운은 지사로서 서북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훈장과 의원을 병행하였고, 주형로는 충청도 단양에서 훈장노릇과 침술로 생계를 꾸렸으며 풍수와 관상도 보았다. 특히 문양해는 앞에서 보았듯이 도교의 수양법, 즉 仙術을 익힌 자로 알려졌는데 仙人들과 관련한 온갖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거사를 준비하였으며 여러 지역을 떠돌며 동조 인물을 포섭하고, 거사의 조직체계를 갖추기도 하였다. 그리고 발생 지역이나 사건의 상호 관련성 면에서 볼 때, 일회성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

⁶⁰⁾ 吳洙彰,《朝鮮後期 平安道民에 대한 人事政策과 道民의 政治的 動向》(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96), 223~226等.

상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18세기 후반, 정조때에는 흔히 말하는 '직업적 봉기꾼'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밖에 승려들도 여전히 민중사상 전파의 일부를 담당하며 거사에 참여하였다. 이 때 승려들이 전파한 민중사상은 미륵신앙과 같은 민중불교보다는 정감록이었다. 이는 정감록이 민중사상의 중심적 위치를 확고히 했음을 말해준다. 이를테면 구례 花嚴寺의 승려 尹藏은《鄭鑑錄》을 사찰에 숨겨두었다가 발각되어 유배당했다.61) 또한 일부 승려들은 민중운동의 주체들과 교류하면서 민중사상을 전파하거나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운동주체들 사이의 연락을 돕기도 하였다.

한편 '非僧非俗'의 무리, 즉 居士들도 민중사상을 전파하였다. 이들은 호적에서 이름이 빠지고 신역이나 군포도 없는 자들로, 떠돌아 다니는 백성들 가운데 가장 수상하다고 지목되었다.62) 이 무렵에는 역모를 꾀하는 자들이 거사 집단 속에 많았으며, 하동은 거사들의 집결지였다.63) 이들은 작게는 명화적이 되고, 크게는 반역을 기도하였다. 그리고 정조 9년(1785) 11월 '三水府' 거사모의64)에 柳漢敬・柳泰守(李泰守) 등 거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李亡鄭興'을 주장하였으며, 체포 당시 정감록으로 보이는 《鑑影錄》과 같은 책들을 소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 때의 거사모의에 李龍範을 비롯하여 많은 미륵신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그 모습을 "甲山에형세가 있는 사람은 미륵신도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이들은 거사들과 연계하여 미륵세계를 구현하려 했다. 이 때의 사상기반은 미륵신앙과 정감록 사상이 습합된 독특한 민중사상의 틀이다.

19세기에 들어와 홍경래 난을 겪으면서 민중사상 운용의 틀에 변화가 일어 났지만, 그 사상을 전파하고 민중운동을 이끌어간 주체는 18세기 후반, 정조

^{61) 《}正祖實錄》 권 19, 정조 9년 3월 을축.

^{62) 《}正祖實錄》 권 21, 정조 10년 2월 병신.

^{63) 《}正祖實錄》권 21, 정조 10년 2월 을미.

⁶⁴⁾ 全信宰,〈居士考-流浪藝人集團研究序說-〉(《韓國人의 生活意識과 民衆藝術》,成 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84).

裹惠淑,《朝鮮後期 社會抵抗集團과 社會變動研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4), 181~205\.

때와 변함이 없다. 이 때도 '유랑 지식인'이자, '저항 지식인'들이 민중사상을 전파하고 운동을 이끌었다. 순조 4년(1804) 거사모의를 주도한 李達宇와 張義 綱, 순조 17년 명화적과 결탁하여 거사모의를 주도한 蔡壽永과 安有謙, 순조 26년 청주괘서의 주역 金致奎, 같은 해 '紅霞島' 거사모의를 주동한 鄭尙采, 철종 2년(1851)에 '海西獄事'를 주도한 蔡喜載와 柳興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서 정상채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정상채는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평양으로 옮겨 그 곳에서 자라난 후에 다시 강원도 영월로 옮겼다. 그는 의술과 풍수 등을 생업으로 삼아 각지를 전전하였다. 그는 평소 이곳저곳에 출몰하여 종적이 홀연하고 이름과 나이를 수시로 바꾸며, 《幻妙門》과 같은 비기를 이용하여 환술을 부렸다.65) 그는 '呼風喚雨'의新異한 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졌고 그의 동료들도 그러한 말을 믿을 정도였다. 이 때 대부분의 민중사상 주재자들의 경우는 정상채와 비슷한 경로를 걸었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중반 東學이 창도되기 이전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때 '저항 지식인'과 같은 민중운동의 주체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 아래서 거사를 준비했다.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거사자금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재력 있는 자를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인세력' 거사모의 때 양형과 문양해는 홍국영의 4촌 동생 洪福榮을 끌어들여 '하동에 거처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냥의 자금을 모았다. 그러나이런 일은 드물었다. 거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거사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사력의 확보도 어려웠다. 정감록 등 민중사상을 통해 동조 인물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공격' 거사모의 때 문인방은 '流丏' 등을 동원할 방법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자금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한편 민중운동의 주체들은 대부분 현실의 정치집단에서 배제된 인물들이다. 영조 때 무신란 이후의 '무신여당', 이를테면 이지서 · 박민추 등이 그렇고 정조 초반 홍국영과 송덕상 등이 실각된 정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인물

^{65)《}推案及鞫案》281 4, 병술 罪人亨瑞尚采申季亮鞫案 罪人尚采結案, 847~848 48.

들, 즉 이경래·문인방·홍복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체제를 부정하고 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하는 변란의 특성상 그 주체들은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 성향이 강했다. 이를테면 앞의 '무석국' 거사모의 때 팔도의 감사와 수령을 미리 임명했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金東翼은 강원감사로, 金商圭는 광주부윤으로 행세하며 동조 인물들을 모았던 사례가 전형적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물리적 방법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집단으로 진입하기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다.

더욱이 19세기에 접어들면, 이들은 정치집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외세와의 연계'까지도 계획하였다. 이들은 거사의 준비과정에서 대마도나 일본과 연결 을 맺거나 그들에게 청병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일은 정감록의 '외세침공설'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까지도 민중운동의 주체들은 외세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거나 이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는 '반외 세'를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의 엽관적 성향이 강했음을 말해주는 것이 다. 외세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즉 '반외세'의 주장은 1860년대에 들어가 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중운동의 주체들이 단지 엽관적 행태만을 보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저항을 통하여 무엇을 추구하였을까. 그들은 권력의 장악을 거사의 목표로 삼았다. 이 때 정감록과 같은 민중사상의 여러 체제부정 논리는 이러한목표를 합리화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그들은 거사의 목적으로 '撥亂反正'을 내세웠다. '산인세력' 거사모의 때 문양해는 거사의 목적에 대해, "지금세상은 쇠퇴할 운명에 이러렀으니 만일 인재가 있으면, 응당 반란을 다스리고 나라를 회복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66)라는 주장으로 거사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 이 때 양반으로 사건의 핵심이었던 李瑮은 자신들의 하는 일에대해 《水滸志》의 宋江의 말을 빌려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한다"라는 말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67) 이들은 민중사상을 논리적 틀로 삼고 권력장악을 목표로 거사를 준비하였으나, 이 단계에서는 권력장악 후의 정치구도를 그려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66) 《}正祖實錄》 권 19, 정조 9년 3월 임신.

^{67) 《}正祖實錄》 권 19, 정조 9년 2월 기유.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의 불평등 구조를 비판하는 등 평등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팔공암' 흉서 사건 때 주동 인물들 사이에서 "우리들이 오랫동안 평민으로 있는 것은 부당하다. 어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68)라는 대화가 오가는 등 피상적이나마 신분제를 부정하는 요소가 나타났다. 앞의 '문의'괘서 때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이 때 양반 吳命垕는 李恒延에게, "양반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 마땅히 귀한 자가 천하게 되고 천한 자가 귀하게 되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그의 부친 吳遂萬도 "양반의 교만한 기세를 부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69)

민중운동의 주체들은 단편적이나마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이들이 토지나 부세문제 등 경제의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이나 대안을 내놓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다만 순조 4년(1804) 거사모의를 주도했던 안악의李達字가 공초과정에서 주장한 토지개혁안이 주목된다. 이달우는 당시 극심했던 토지겸병의 폐해와 농민층 분화의 실상을 지적하고, 이를 당시 정권의 制産의 실패 때문으로 돌렸다. 그리하여 그는 정전제와 균전제를 기반으로 하는토지개혁안, 즉 한 가구마다 70負의 토지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70)

이러한 주장들은 보편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의 저항에서만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이 곧 민중운동 주 체들의 거사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처해 있던 현실의 좌절을 통해 형성된 사상과 철학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발전되어 갔다.

(3) 정부의 대응책

조선 후기 민중사상의 확산은 正學, 즉 성리학의 지배이념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확산일로에 있는 민중사상과 민중운동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68)《}推案及鞫案》165型, 계寺 元八推案 罪人鳳禧元八一處面質, 471~472쪽.

^{69)《}推案及鞫案》184책, 무진 罪人之曙推案 李恒延供, 46~47쪽.

⁷⁰⁾ 한명기, 〈사회세력의 위상과 저항〉(《조선정치사 1800~1863 상》, 청년사, 1990), 293~294쪽.

정부는 정감록과 같은 민중사상을 正學, 즉 성리학을 강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雜術, 左道, 異端, 邪學의 일종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민중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성리학의 지배논리를 강화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 이른바 '衛正斥邪'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정조는 민중사상이 확산되고 있던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선비를 높이고 유교를 중시하는 것이 금일의 급선무"71)라는 인식을 가졌다. 즉 조선왕조 개창 이래 지배이념인 성리학의 강화를 통해 민중사상의 확산을 막고, 이에 가탁하여 일어나는 민중운동을 차단하려 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민중사상의 주창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에서는 흔히 민중사상의 주창자들을 '怨國之心'이나 '思亂樂禍之心'을 품은 자들로 인식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변란이 일어난다고 믿었다. 특히 18세기후반 이후 현안으로 떠오른 천주교도들에 대해서는 五斗米徒, 黃巾賊, 白蓮教徒나 盜賊, 綠林의 무리로 인식하였다.72)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讖緯, 妖書, 妖言을 짓거나 이를 전용하여 민중을 미혹시킨 자는 모두 斬한다"73)라는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일반 민중이 여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요컨대 정부는 변란 형태의 민중운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민중사상을 근절하려 했다. 그러므로 정부의 대응은 민중운동의 형태, 즉 요언, 괘서, 거사모의 등 저항의 수준이나 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모든 조치가 민중사상을 근절하는 데로 모아졌다. 구체적 대응 방식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는 해결한 후에 신하들이 '민중사상을 금하는' 조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고, 이에 국왕이 교지를 내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영조 9년(1733)에 호남 일대에서 정감록에 바탕을 둔 변란이 잇따라 일어나자 정부에서 잡술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 때 藥房提調 尹淳은 호남에 잡술이 성행하게 된 연유와 전파의 갈래 및 이와 관련해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74) 아울러 잡술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71) 《}正祖實錄》 권 14, 정조 6년 12월 경인.

⁷²⁾ 趙 珖, 앞의 책, 175~176쪽.

^{73)《}大明律》 권 18, 刑律 造妖書妖言.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끝에 국왕은 讖緯를 금지하라는 교서 를 내렸다.

이처럼 변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변란의 근저에 민간사상이 깔려 있으므로, 이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조 15년에 평안도에서 정감록과 같은 참위서가 성행하자, 이 책들을 불사르라는 요청이 잇따랐다.75) 같은해 남원에서 일어난 梁纘揆 흉서의 처리 과정에서 국왕은 많은 사람들이 잡술을 비판하면서도 거기에 물드는 현상을 걱정하였다.76) 그리하여 영조 38년에 국왕은 "참서와 비기를 감추어 두었다가 발각된 자는 해당 감사로 하여금 장문케 한 후에 세 차례 嚴刑하여 해도에 定配하라"는 전교를 내렸다.77) 참위서의 소지자들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전의 피상적조치로는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중사상과 관련하여 변란은 잇따랐고, 이에 정부에서도 잡술을 금하는 교지를 내리거나 해당 지역에 어사를 파견하여 단속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였다.78)

민중사상 관련 저항은 그 성격상 실체가 불명확한 요언이 이어지게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철저한 사건의 규명과 조속한마무리는 통해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숙종 때 '首陽山 生佛出現說'의 조사과정에서 생불로 알려진 鄭弼錫을 체포하기 위해 수양산 義相庵일대의 여러 사찰들을 철저히 수색했다. 정조 때 '山人勢力' 거사모의 조사과정에서 '智異山 仙苑'의 '仙人'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리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인'들이 옮겨 다녔다는 평안도 香山까지 여러 차례 수색하였다. 그 결과는 이들 모두 실체가 없는 가공의 인물로 판명되었다.

이 때 신하들은 확대수사를 요구하였으나, 국왕은 사건의 핵심이 밝혀졌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 때 정조는

^{74) 《}英祖實錄》 권 35, 영조 9년 8월 갑술.

^{75) 《}英祖實錄》 권 50, 영조 15년 8월 경진.

^{76) 《}英祖實錄》 권 51, 영조 16년 정월 정묘.

^{77) 《}英祖實錄》 권 99, 영조 38년 2월 계사.

^{78) 《}英祖實錄》 권 110, 영조 44년 4월 신사.

삼남의 관찰사들에게 훈유하여 "소요가 발생하여 民情이 불안하니 경들은특히 주의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라. 지난번에 훈유하였음에도 소란의 기미가보이니 이번에도 안정시키지 못하면 兵使・水使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79)라고 하여 사건을 조기에 수습함은 물론이고 요언의 확산으로 인해 소란스러워진 민심을 달래고자 하였다. 정조가 陳東喆 등에 의한 '擧事說'관련요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확대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홍충도관찰사 沈豊之를 파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80) 요컨대 정조의 생각은 '진정시키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사건이 마무리 될 무렵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도 처벌하였다. 그것은 주로 해당 도의 이름을 바꿔버리거나, 해당 읍호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서울공격' 거사모의 주역 문인방의 출신지인 谷山府가 谷山縣으로 떨어졌다. 순조 때의 '홍하도' 거사모의와 관련하여서도 淸州牧이 淸州縣으로 떨어졌으며, 忠淸道도 公忠道로 바뀌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국왕은 신하들로부터 역적 토벌에 대한 축하를 받기도 하며, 민심 위무책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에 大赦免令을 공표하기도 한다.81)

정부에서는 특정 계층에 대해 회유책도 썼다. 회유의 대상은 '힘있고 재주 있는 자'로서 현실을 불평하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이다.⁸²⁾ 이들은 '좌도'에 쉽게 빠져들었고 변란을 모의하는 주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좌도'를 철저히 금지하는 대신에 힘있고 지략있는 자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줌으로써 변란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조처에도 불구하고 정감록 등의 민중사상과 여기에 바탕을 둔 민중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이것은 민중사상이 체제모순의 심화 속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중사상은 그 속성상 사회변동을 배경으로 하여 성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체제모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없는 상황에서 민중사상을 근절시키기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민중사상은 정부의 끈

^{79) 《}正祖實錄》 권 19, 정조 9년 3월 을해.

^{80) 《}正祖實錄》 권 19, 정조 9년 3월 정축.

^{81) 《}正祖實錄》 권 15, 정조 7년 정월 정미.

^{82) 《}正祖實錄》권 24, 정조 11년 8월 을묘.

질긴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회변동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였다.

이같은 변란 형태의 민중운동은 조선 후기 민중항쟁의 주류인 민란, 즉 농민항쟁과는 또다른 형태의 저항이었다. 그것은 이 때의 민중사상의 한계인 비현실·비합리·비과학적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저항논리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점, 그 주도층이 농민들을 끌어들일 수 없는 정치, 경제적으로 몰락한 '유랑 지식인'들이었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변란 형태의 민중운동은 저항이념과 저항공간의 측면에서 민란, 즉 농민항쟁보다 진전된 성격을 지녔다. 민란이 정치, 사회적 이념을 제시하지 못했던 반면에, 변란은 신분의 평등→撥亂反正→새로운 세계의 구현을 통해 저항의 정당성를 확보하려 했다. 또한 민란이 부세문제를 둘러싼 국지적 저항 형태를 극복하지 못했으나, 변란은 일정 지역에구애받지 않고 지역간의 연대를 통해 전국을 저항의 무대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19세기 전반까지의 변란 형태의 저항은 거사를 실행하는 단계에까지이르지 못한 채 '思亂'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민중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홍경래 난 때 변란과 민란의 결합이 시도된 이래, 동학농민전쟁 때 본격 결합함으로써, 민중사상을 기반으로 삼은 변란 형태의 민중운동은 민란 형태의 농민항쟁과 같이 본격적 민중항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高成勳〉